

# ten years



## 정대협 창립 10주년 심포지엄



장소 : 전국은행연합회관  
일시 : 2000년 11월 16일 오전 9:30-16:00  
공동주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MBC, 한겨레신문사  
후원 : 행정자치부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3층  
Tel:02-365-4016, 392-5252 Fax:02-365-4017

Internet:<http://witness.peacenet.or.kr> E-mail:[jdh@peacenet.or.kr](mailto:jdh@peacenet.or.kr)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창립 10주년 심포지엄 일정 01

심포지엄

I. 정대협 운동 10년을 되돌아 보며 (사회: 김윤옥 / 정대협 공동대표)

기조강연: 정대협 운동10년과 앞으로의 과제 (지은희 / 정대협 공동대표) 02

지정토론 (1) 피해자 인권회복 (정진성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05

(2) 피해자 배상문제 (장완익 / 변호사)

(3) 전범자처벌 (조시현 /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II. 2000년 법정을 위한 연구성과들 (사회: 한국염 / 정대협실행위원)

(1) 증언: 기억, 재현, 역사쓰기(양현아 / 동국대 사회학과 강사, 김수진 /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06

(2) 피해자의 육체적 후유증 (이수현 /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수료) 12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 (이철원 / 아이맘 상담소 소장) 17

피해자의 사회적 후유증 (심영희 /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23

(3) 일제강점점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김창록 / 부산대 법학과교수) 29

(4) 왜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인가? (윤정옥 / 정대협 공동대표) 44

정대협 연역 46

정대협 조직표 4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께하는 단체들 48

정대협운동사 49

2000년 법정 연혁 50

2000년 법정 활동사 50

국제실행위원회 조직표 51

역대 회원단체, 실행위원, 실무자들 52

정대협 10년의 발자취에 함께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4



정대협 창립 10주년 심포지엄

행사일정

9:30-10:00 등록

10:00-10:30 제 1부 정대협 창립 10주년 기념식 (사회: 김윤옥 / 정대협 공동대표)

I. 개회사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

II. 축사 이수성 (평화와 통일을 위한 복지기금재단 이사장)

III. 영상으로 보는 정대협 10년의 발자취 (양미경 총무)

IV. 감사를 전하며 (김혜원, 김신실 실행위원)

10:30-12:30 제2부 학술 심포지움

I. 정대협 운동 10년을 되돌아 보며

기조강연: 정대협 운동10년과 앞으로의 과제 (지은희 / 정대협 공동대표)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1) 피해자 인권회복 (정진성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2) 피해자 배상문제 (장완익 / 변호사)

(3) 전범자처벌 (조시현 /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12:30-13:30 점심식사

13:30-16:00 II. 2000년 법정을 위한 연구성과들 (사회: 한국염 / 정대협 실행위원)

(1) 증언: 기억, 재현, 역사쓰기

(양현아 / 동국대 사회학과강사, 김수진 /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수료)

(2) 피해자의 육체적 후유증 (이수현 /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수료)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 (이철원 / 아이맘 상담소 소장)

피해자의 사회적 후유증 (심영희 /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휴식

(3) 일제강점점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김창록 / 부산대 법학과교수)

(4) 왜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인가? (윤정옥 / 정대협 공동대표)

전체질의응답



# 정대협 운동 10년과 앞으로의 과제

지은희 (정대협 공동대표)

## 1. 정대협의 운동목표

1990년 11월 16일, 37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결성된 이후 우리는 세가지 운동목표를 가지고 활동해 왔다.

1)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인류역사에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쟁 중에 혹은 점령지에서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어난 강간과는 달리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가와 군이라는 공권력이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한 성노예 제도였고, 이 제도를 위해 13-18세의 소녀 약 10-20만 명이 강제로 끌려가서 군의 엄격한 통제하에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당하면서 노예생활을 당했다. 그리고 일본 패전 후에 이 여성들은 유기 살상 당하였고, 일본군이 기록조차 없애 버림으로써 역사 속에 폐기처분 당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가장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규정지었다. 이 범죄행위가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비인도적인 범죄행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또 가해국이 세계 강대국의 한 나라일지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 두 번째 우리의 운동목표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었다. 전쟁범죄의 피해자,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의 피해자, 한국역사의 피해자인 생존하신 할머니들은 우리가 운동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그 억울한 피해사실을 가슴에 묻은 채 어렵게 살아가고 계셨다. 사회에서 소외당한 채 스스로의 삶을 송두리채 망쳐 버린 범죄자를 고발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고 계셨다. 우리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실 때 할머니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가해자를 정죄하고 명예와 인간적 존엄성을 되찾아야 하

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운동을 시작했다.

3)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가장 처절한 피해현실에 대해서조차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 배상을 받지 못한 한일 관계는 평등한 한일관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을 우리 운동의 힘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한일관계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진정한 아시아의 연대와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라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포함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의 사죄와 반성없이 진행되는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 중대는 일본군국주의의 부활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아시아의 평화를, 그리고 세계평화를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 은폐되어 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아시아의 세계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부각시키고,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이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점과 한일간의 평등관계 정립 그리고 세계평화에 기여코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 2. 정대협의 활동성과

1) 일본정부로 하여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사실인정을 하도록 만들었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범죄인정, 공식사죄와 개인사죄,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 위령비 건립,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이라는 구체적인 7대요구를 제시하며 활동해 왔다.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 국회를 상대로 압력활동, 증언집회, 시위 등을 전개해 왔고, 특히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12시에 진행되는 수요 정기시위는 2000년 11월 15일로 435차를 맞고 있다.

정대협 7대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요약하면

7 대 요구	진행 상황
1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의 전모를 공개하라!	일본정부의 태도변화 · 일본군 '위안부' 존재 부인 · 일본정부 1차 진상조사발표(92.7.4) : 일본군 '위안부' 존재인정 그러나 강제성 부인 · 2차 조사발표(93.8.4) : 강제성 인정, 그러나 강제 모집의 주체가 민간업자, 군·관의 주도적 관여는 부인하는 등 부분적 강제성 인정. · 위안부 총숫자 / 정책입안자, 관리, 운영, 명령체계 / 위안소생활상태, 패전후 조치 등에 대한 자료공개는 하지 않음. · 민간연구자 활동 · '위안부' 제도에 일본군, 국가의 주도적 관여, 명령계통조사
2 범죄를 인정하라	· '위안부' 제도사실을 인정 · 그러나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상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추업을 행하기 위한 부녀매매금지 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노동금지조약, 노예금지조약 위반임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음.
3 '위안부' 범죄사실에 대해 사죄하라	· 90.5. 노태우대통령 방일시 일천황 "통석의 염" · 92.1.8. 미야자와 수상 방한, "반성과 사과"의 뜻 · 93.11.5 호소카와 수상 방한, "진사드린다" · 95.2. 연립여당의 국회부전결의안조차 자민당 등이 반대 · '여성을 위한 아시아 국민기금'에서 국민기금을 받은 소수피해자에게 수상개인의 사과편지 전달 · 국회결의 사죄와 개인에게 사죄안하고 있음.
4 법적으로 배상하라!	· 65년 한일협정으로 배상은 끝났다는 입장 고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만들어 민간모금을 통해 몇분의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불
5 위령비를 건립하라!	· 진행되지 않음
6 교과서에 명기하라!	· 1994년부터 7개 교과서에 부분적으로 포함.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성 등은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용어언급 등 피상적으로 기술, 97년부터 교과서 삭제운동
7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본검찰, 정대협과 피해자가 94.2.7. 제출한 책임자 처벌 고소, 고발장을 접수조차 거부

다음과 같다.

2) 역사의 뒤안길로 묻힐 뻔 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이 규명되고 있다. 정대협의 운동으로 생존자 할머니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공개적인 증언이 논문으로, 책으로, 연극으로, 영화로 만들어져 역사에 알려지게 되고, 각종 학술논문, 학위논문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회복하는데 기여하였다. 공개적으로 국민과 언론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하는 동안 자신의 삶이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 일본군과 정부의 범죄행위로 인해 철저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존심을 회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괴로운 기억을 되살리는 아픔도 있지만,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주체로서 거듭나게 되었다. 몇몇 생존자들은 그들의 아픈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개인의

고난을 승화시키고 대중의 의식을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정대협의 운동으로 피해자분들의 경제적 상황도 나아지게 되었다. 1993년 5월 「일제하 '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생존자 1인당 일시지원금 500만원과 월 50만원의 생계비 지원, 의료혜택,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등이 주어지고 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지역에 따라 액수와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물질적인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다. 98년 4월 한국정부는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들에게 3,150만원을 지원하였다. 정대협은 3번의 국민모금으로 할머니들을 지원하였다.

4) UN 인권위원회, ILO 등 국제기구 및 국제인권단체의 공식조사와 보고서 채택을 이끌어 냄으로써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전쟁중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1993년의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



언과 행동프로그램', 국제법률가협회(ICJ)의 1994년 보고서, 1995년의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 1996년 UN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쿠마라스와미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군대 성노예 보고서,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98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채택된 게이맥두갈보고서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로서, 이는 국제법 위반이고 이에 대해 공식사죄 및 책임자 처벌, 법적 배상을 해야한다는 국제적 기준을 확립하였다. 이는 전쟁중에 이루어지는 강간, 성노예 등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은 새롭게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설립내용에도 반영되고 있다.

5) 미국과 한국에서 일본 전범 입국금지 조치를 이루어 내었다. 미국은 1996년 12월 법무성의 발표로, 한국은 1997년 11월 국회에서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본 전범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입국이 금지되는 일본 전범자 중 '위안부' 제도 관련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 아시아 피해국들과 일본의 연대형성을 통해 아시아지역 여성들간의 연대, 여성운동을 강화하였다. 특히 남북여성의 연대운동을 남북협력운동의 디딤돌이 되었다. 1988년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후부터 일본의 여성운동과의 연대가 이루어졌고, 1992년 첫 아시아 연대회의를 한 이후부터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간에 연대활동이 모색되었다. 여성운동과의 연대는 증언모임, 법적소송 지원활동, 재정적 지원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각국의 여성운동간의 연대도 아시아 연대회의를 통해 특히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을 함께 준비함으로써 여성운동의 강화에 기여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남북 여성들이 화해를 이루며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려는 첫 만남에서부터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1991년 5월 31일~6월2일 일본 도쿄에서 처음으로 만남 남북여성들과 일본 여성들은 1992년 5월 2일 제 3차 평양토론회에서 남북여성이 함께할 주제로서 '위안부' 문제를 선택했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 없이 식민지 지배의 청산과 자주성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공감했던 것이다.

남북여성들은 UN인권소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에서 그리고 동경에서 평양에서, 북경에서 독일 '전쟁과 여성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만나 동일한 입장으로 함께 국제활동을 전개하였다.

7) 우리운동은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회피하면서 그러나 국제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약화시키고 그 본질을 밝혀내는데 기여하였다. 피해자들의 곤궁한 현실을 이용하여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본정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 즉 공식사죄와 정신적 물질적 배상책임을 모면하려던 일본정부의 의도는 피해자들의 곤궁한 현실을 이용하여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본정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 즉 공식사죄와 정신적 물질적 배상책임을 모면하려던 일본정부의 의도는 피해자들의 거부와 아시아 피해국가 운동단체들의 연대운동으로 약화되었다.

### 3. 정대협의 향후 운동과제

1) 정대협의 가장 큰 당면운동과제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의 성공적 개최이다. 현재 우리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을 준비 중이다. 우리는 여성의 힘, NGO의 힘으로 중일전쟁과 제 2차 세계대전동안에 일본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전쟁범죄자를 처벌하는 시민들의 법정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현재 일본군 성노예 제도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지라는 국제적인 모든 권고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 피해국 한국,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여성단체들이 공동주최하고 세계의 인권단체 여성단체, 시민 단체들이 지원하는 국제법정에서는 일본정부의 국가책임과 전범개인의 책임에 대해 판결할 것이다. 세계적인 법률가 국제법학자들과 국제인권운동가들이 판사로 참여하고 각국의 법률가들이 검사단으로 활동하는 국제민간법정은 일본정부의 범죄행위를 세계에 알릴 것이며, 기존의 법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일본정부의 국제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인류사에 저지른 일본군과 일본정부의 범죄행위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판결되어질 것이다.

2)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이후에 우리운동의 과제는 판결이 이행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의 운동단체와 함께 특별법정 운동과 책임자 처벌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일본내 특별법 제정운동은 다양한 그룹에 의해 진척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단계에서 필요한 특별법의 내용은 일본정부의 국제법적 책임이행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진상규명, 공식사죄, 정신적 물질적 배상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도 분명히 가능한 한 범죄자를 찾아내서 처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제 2차 세계대전 후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소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지른 군인들의 강간행위를 비인도적 범죄로 처벌한 선례가 있다. 또한 네덜란드 출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전후 1948년 3월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 설치된 전범재판소에서 1명의 일본인 장교가 사형을 선고받는 등 강제 매춘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13명 가운데 9명이 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제적 선례가 있다. 국제법정을 통해 책임자가 밝혀지면 이에 대한 처벌은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운동은 강화되어야 한다.

3) 지속적 국제활동을 통해 일본정부로 하여금 UN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안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적 압력 중의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행한바 있는 일본전범의 입국금지조치를 유럽 각국이 취하도록 하여 일본의 전쟁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일이다. 보다 직접적 압력은 ILO총회 결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제도가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임을 확인하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1930년 6월 28일 국제노동기구의 29번째 협약으로 탄생한 강제노동금지조약에 일본은 1932년에 가입했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강제노동임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었으므로 일본정부가 이 조약을 위반할 것임은 자명하다. 문제는 어떻게 일본정부의 ILO분담금을 앞세운 로비활동을 이겨내며 ILO총회 의결을 성취해 내는가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NGO단체들의 적극적 활동이 요청된다.

4)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을 해체하도록 만드는 일과 일본내에서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역사 교육을 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은 보다 보수적이 되고 교과서 기재내용도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기금도 최근 또다시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밀리에 접촉하면서 뒤통사지 못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개하려하고 있다. 국민기금을 해체시키는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5) 정대협은 한국내에서의 활동도 재정비하고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알고 있다.

국제법정준비동안 진상규명에는 진전이 있었으나 패전 이후 각국에 버려진 피해자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재정적 제약도 있으나 할머니들이 소리 없이 타향에서 돌아가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외조사연구를 진척시켜야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를 제대로 쓰게 하고 역사교육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관을 전쟁과 여성 인권센터」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의 시각을 국내에서 일어났던 전쟁이나 무력갈등하의 여성폭력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여성폭력문제에도 우리들의 관심과 운동을 진전시켜야 한다.

한편 지금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는 현재 돌아가시고 계신 할머니들의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건강을 돌보는 일이다. 아픈 과거 때문에 그리고 고난 때문에 망가진 피해할머니들의 육체는 지금 수 많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는 건강이 회복되어 스스로에 대한 긍지와 역사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당당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해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일 것이다.



## 지정토론 및 질의 응답

- 1) 피해자의 인권회복 (정진성 / 서울대 사회학과교수)
- 2) 피해자의 배상문제 (장완익 / 변호사)
- 3) 일본 전범자 처벌 (조시현 / 성신여대 법학과교수)



# (1) 증언: 기억, 재현, 역사쓰기

## 「증언4집-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를 펴내며

양현아(동국대 사회학과강사)  
김수진(서울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 1. 증언집이 나오기까지 : 물기에서 들기로

이 증언집을 꾸민 증언팀이 처음 모인 것은 1999년 4월 2일이었다. 원래 이 모임은 2000년 12월에 있을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을 위한 진상규명 활동의 일환으로 구성되었고, 미증언자들에 대한 조사의 차원에서 결성되었다.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의, 다양한 전공의,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주로 구성된 우리 모임은 스스로를 증언팀이라고 이름 붙이고 먼저 군위안부 문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재현의 문제 등에 관하여 한 달 정도 오리엔테이션(방향잡기)을 하였다. 동시에, 기존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면접태도>를 만들었다. 이 질문지와 면접 태도는 증인의 위안부 기간뿐만 아니라 전 인생을 포괄한다는 점, 사건 자체가 아니라 증인이 거기에 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주의 기울인다는 점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면접의 주도권이 면접자가 아니라 말하는 생존자 증인에게 있다는 점은, 우리의 '조사'가 물기에서 들기로 문턱을 넘어서게 하였다.

증인의 말속에서 '큐'를 찾아 그의 기억을 촉발하라.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것은 실타래의 맺힌 매듭에서 함께 바라보고 그것과 씨름하는 그런 작업이었다. 각 조는 평균 세 번에 걸쳐 증인을 만났는데, 조에 따라 면접은 몇 달에서 일 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기억이 풍부히 남아있는 경우, 말씀하기를 꺼려하는 경우, 치매 증상과 함께 기억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대단히 안 좋은 경우 등 생존자라고 해서 모두 '기억의 생존자'는 아님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60년이라는 위안부 사건이 가지는 시간의 무게,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의 침묵과 겨루기 시작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하여, 증언팀에서 면접을 한 증인은 25명 정도이고, 증언 활동을 한 사람들은 모두 30명 정도에 이른다. 한편으로 생존자들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증언팀의 토론 모임이 이어졌다. 할머니들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우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면접 내용을 원록취 자료로 만드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특히 '들리는 대로 쓴다'라는 처음의 생각은 매우 순진한 것임을 절감하는 목소리들이 가득하게 된 것이다. 원록취문이 기록해야 하는 구술 언어는 문자 언어와는 '다른' 체계의 언어이다. 구술은 그 발음, 문법, 표현 등에서 문자언어와는 다른데, 우리는 문자로 구술을 표현해야 한다는 간극과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녹취를 푸는 것 자체가 이미 선택이요, 재현이요, 글쓰기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 재현의 대상은 바로 증인의 기억이요, 70-80년 묵은 존재의 무게였다. 그 구술언어는 식민주의, 민족주의, 여성주의 등으로 일컬어지는 사고틀이 무엇인가를 다시 성찰하는 기초가 되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녹취를 푸는 원칙을 세워 갔다. 여기서 증인을 만난 면접자의 '기억'도 중요한데, 녹취를 풀 때, 당시 증인의 표정, 동작 등을 떠올려야 했으며, 왜 그 때 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 때 어떻게 이야기를 회피했는지 등 이야기의 회로를 이해하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증인의 침묵도 기억하고 있어야 했다. 이렇게 녹음기에는 녹음되지 않는 많은 사안들을 면접자는 이해하고 저장하고 있어야 했다. 또한 같은 조 안에서도 서로의 이해를 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해 자기가 '들은' 증언에 대해서 서로 다투면서 녹취가 풀어졌다. 섬세한 녹취 풀기는 앞으로 개척해야 하는 기술적 학문적 문제를 많이 남겨 놓고 있다. 이렇게 해서 증인을 만난 우리도 점차로 '증인'이 되어갔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원록취문은 법정이나 법학의 틀에서 바라본 증거 자료에 국한되지 않고, 역사적 자료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었다. 그 안에는 개인으로서 증인의 체험과 역사적 존재로서의 사건의 관찰이 복합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러한 사건에 부여한 의미작용이 구술적 표현 속에서 살아나고 있었다. 전국조사라는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경상도 및 전라도 지역에서 다른 조사팀이 결성됨에 따라, 증언팀은 서울과 비교적 근 거리에 거주하는 생존자의 조사에 국한되게 되었다. 2000년 1월부터는 증언집을 만들기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였

다. 우리는 정해진 원칙, 시각, 이론을 가지지 않은 채, 혹은 그것을 빨리 선택하기를 유보하면서 서로의 감(sensibility)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국내와 외국의 증언집을 모아 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증언팀에서 만든 원록취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증언에 대한 위명업을 하였다. 사실, 이 시간은 재현과 편집의 감수성을 키워갔다는 점에서 상당히 '형성적인' 시간이지만 불확실한 상태를 견딘다는 점에서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이었다. 원록취록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증인의 일생, 경험, 기억, 인성의 특성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2000년 6월에는 본격적 편집회의에 들어갔다. 각 증인마다 5차-10차에 걸친 증언편집본이 나왔고 원록취문과 편집본을 함께 읽는 과정에서 편집팀은 할머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게 되어 마치 모두 할머니를 만나 본 사람처럼 느끼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각 할머니에게 별칭이 생겨난 것도 이 때문이다. 타이타닉 할머니 정윤홍, 꺼먹소 순만이, 전셋집 때문에 골치아픈 김화선, 말 잘하기로 소문난 최갑순, 이쁜이 할머니 김복동, 무스탕 할머니 안법순 등. 몇 번씩 녹취를 읽으면서, 참여기를 함께 쓰면서, 끊임없이 편집을 고치면서 우리는 마치 모든 할머니를 알고 있고 만나고 증언을 받았던 것처럼 서로의 편집에 관여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어느새 우리 모두가 할머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서로의 느낌을 신뢰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신뢰는 아련하게 잘 잡히지 않고 부유하던 할머니들의 모습에 형태와 울림을 부여하는 일이 안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직접 할머니를 면접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편집에 개입할 수 있는 '공동작업'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9월부터는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맞춤법, 기호, 주 및 괄호 사용 정도와 같이 기계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각 증언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최후로 다시 점검하였다. 증언활동은 이렇게 20-40대의 증언팀 여성들이 증인인 70-80대의 여성들과 함께 떠났던 기억 여행이었다. 그것은 한국의 지난 한 세기라는 시간 속으로 떠난, 여성의 기억이 어떻게 역사쓰기의 자료가 되는지를, 그리하여 여성이 어떻게 역사의 '주체'인지 드러내고자 했던 흥미진진한 여행이었다. 이 증언집은 그 기억 여행의 기록물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억'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 2. 증언의 재현과 녹취록의 편집 : 열린 질문과 열린 답변들

일년 여의 시간에 걸쳐 많은 고민과 실험 끝에 나온 우리의 증언 편집본은 새로운 형식과 내용들을 담고 있다. 지금의 결과물은 열린 질문과 열린 답변을 대면하고, 온갖 시행착오와 따가운 상호비평이 오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책에서 취한 재현의 방식은 하나의 판본, 또는 판본들일 뿐이다. 끝나지 않은 연구의 과제들로 가득한 재현과 편집의 원리들을 살펴보겠다.

#### 1) 증언자들은 누구인가

증언집에 실린 증언의 내용은 위안부로 동원되는 과정이나 위안소에서의 체험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개인마다 약간씩의 편차는 있지만 증언자들은 위안부 경험을 자신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한다. 어떤 분은 위안부 경험 못지 않게 6.25전쟁 때의 공포와 배고팠던 경험을 중요하게 기억하며, 어떤 분은 지금 당장 사기를 당해 빼앗긴 전세금 문제를 더욱 절실하게 호소하기도 한다. 또한 위안부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위안부 생활과 직결되지 않거나 무관해 보이는 것도 많다. 어떤 분은 위안소보다도 남양군도로 가기 전 겪은 난파와 생명의 위협을 훨씬 강렬하게 기억하며, 위안부 생활보다도 '미군 폭격'에 대해 느꼈던 공포를 더욱 크게 가지고 있다. 이는 위안부로서의 경험이란 무엇이며, 그 피해와 상처가 어떤 시간대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회적 차원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문제를 생각하게 만든다. 다양한 증언을 통해 우리는 위안부 경험이란 단지 군인을 상대하는 위안소 생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총체적 차원을 위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또한 그 영향은 지속적이면서도 현재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가족관계나 결혼, 빈곤, 내전적 불안 등 사회, 경제, 문화적 차원들과 중첩되어 있는 성질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증언을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문제로 다뤄야한다고 본다. 또한 증언자의 현재 상태도 하나의 증언이다. 이렇게 보면 증언자들의 기억과 구술 중에서 '위안부로서의 경험'이라는 통념에 걸맞는 것을 골라내어 재현하는 것은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위험한 것이다. 위안부 경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증언자 자신이 위안부 경험이라고 하는 사건과 자신의 삶을 연관지어 해석하고 재현하는 상(像) 안에 있으며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해석자의 시선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합적이고도 다면적이며, 모순적이기까지 한 증언자들의 자기재현에 주목한다. 자신을 재현하는 증언자들의 구술에서는 정형화된 위안부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 일본군에 대한 원한은 일본군장교와의 사랑과 공존하기도 하고, 애기집을 강탈당한 현생의 원한이 아들 낳고



살아보는 후생에의 바램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독립운동가의 딸로서의 자부심은 다른 위안부들의 삶을 '더러운' 과거로 치부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증언자를 쉽게 민족주의의 투사로 상상하고, 그러한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나 의식을 예외적인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증언자들은 가부장제가 부과하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을 내면화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이데올로기들에 자생적으로 저항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단지 과거의 위안부 여성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불굴의 생명력과 의지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뚫고 한국사회의 불리한 조건을 뚫고 살아온,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다의적이고 다성적인 목소리와 그들을 구성하는 다층적인 존재성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의 시선을 개방시키고자 한다.

## 2) 기억과 재현 문제

우리는 증언자의 자기재현을 증언의 기억 구조라고 명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들에 부딪혔다. 첫 번째는 선택적 기억과 침묵의 언어 문제다. 증언자들은 위안부 생활 자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기도 하고,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하며, 강간상황만을 강조하면서 위안부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하기 싫어함과 떠올리기 싫어함은 위안부 경험을 '더럽혀진' 정조로 규정하는 지배적 이념이 개인을 얼마만큼 짓누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성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거나, 그것을 발설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더럽혀짐'이 되살아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에게 각인된 트라우마적 상처의 깊이를 웅변해준다. 이 상처는 위안부 경험 자체가 만들어낸 것임과 동시에 그 경험이 왜 일어났으며,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말해주지 않은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다. 육십 여 년의 세월동안 이 여성들은 아물지 않은 상처를 혼자 감당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 침묵과 기억의 억압이 위안부 문제의 지속성과 현재성을 말해주는 증언이라고 보았다. 위안소 이야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침묵과 억압의 지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의 문제이다. 증언자들은 위안소에 있었을 때의 연도나, 지명 등을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나 위안소에 있었는지, 몇 살에 처음 결혼했는지 모르는 분도 있다. 이는 개인마다 큰 차이가 나는 기억력 때문이기도 하고, 몇십 년이 흐르고 난 뒤여서 기억이 희미해진 탓도 크다. 그러나 우리는 증언들을 접하면서 연도나 지명 등과 관련된 기억의 공통적 특

징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들은 10대 후반의 나이에 낯선 사람, 낯선 고장, 낯선 물건, 낯선 언어에 둘러싸여 생활을 했다. 그러므로 이들의 불확실한 기억은 강제로 끌려가서 철저히 통제된 상황에 놓여있는 자의 위치를 반영한다. 즉 이들의 경험은 사물과 사건을 체계적인 정보의 언어로 기억할 수 있는 선지식이나 조건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명령지휘계통이나 부대 이름, 이동경로 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증언자들이 글자를 모르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시간감각이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다. 글자를 모르는 세대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증언자들은 오히려 문자문화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자신의 기억을 저장해왔다. '몇 년도에 태어나셨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모른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지만 증언자들은 자신을 기사(己巳)생, 또는 무슨 띠에 태어났다고 얘기하며, 절기와 제사 때를 기준으로 시간을 기억한다. 일자무식인 분이 놀라운 기억력과 묘사력으로 듣는 이를 끌어들이는 경우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문자와, 문자를 통해 얻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은 채 갖고 닦아온 기억과 구술이 가지는 힘에 탄복하였다.

또한 이들이 객관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의 기억을 다른 데로 집중하게 만든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세하고 또렷하게 어떤 사건이나, 당시의 주위 환경을 묘사하고, 자신의 육체적, 정서적 느낌을 전한다. 더욱이 60여 년 전의 어린 나이에 겪은 일과 그 느낌이 이렇게 강렬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은 이 경험이 갖고 있는 강도를 짐작하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강렬한 기억 내용들과, 그와 대조적으로 불확실한 기억들을 함께 실음으로써 위안부 경험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기억의 형식적 특성 문제이다. 기억을 구술할 때 시제와 연대기는 일차적 원리로 작동하지 않는다. 즉 기억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일생을 일목요연하게 연대기 순으로 구술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이전의 증언 경험에 기초해서 스스로 증언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개의 구술은 시간적 순서를 쫓아가다가도 현재의 사건이나 사물의 연상고리들을 따라 기억이 풀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소해보이는 것을 단서로 묻혀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커다란 이야기 보따리가 나오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 때 사진을 찍었었지"라고 시작하는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 목격했던 다른 위안부들의 죽음을 끌어올리는 계기이다. 우리는 면접할 때 이미 이러한 기억의 특성에 주의

기울여 증언자의 기억을 활성화시키려 했고, 따라서 녹취에는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힌 이야기들이 펼쳐진 대목이 많다. 또한 3차에 걸친 구술을 보면 증언이 비슷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중복되기도 한다. 이것은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저장하고 있는 기억의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의 시간적 혼동과 연상작용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지를 놓고 상당한 고심을 하였다. 이 고민은 두 개의 축 사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타협할 것인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는 증언자들 각각이 보여주는 개성적이고도 일반적인 기억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증언을 받는 상황에 있지 않았던 독자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축이 그것이다. 우리는 증언자가 기억을 풀어내고 서사를 만들어내는 특징을 텍스트의 구성과 배치를 통해 보여주되, 차례로 읽어내려가는 독자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하거나 이 어붙이는 편집과 그밖의 보조적인 장치들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구성과 배치를 놓고 우리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각 편집자의 일차판본에 대한 상호비판과 토론, 토론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본들을 만들어가면서 3차에서 5차 정도에 이르렀을 때 최종본에 근사한 일개가 나오게 되었다.(예: 연상고리와 큐를 통한 편집본의 수정과정) 증언자의 기억 구조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스타일을 찾아라. 그것이 우리가 시도하게 된, 기억 재현의 원칙이다. 그 결과 어떤 경우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데에서 시작해서 위안부로 끌려갈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적 연대기를 따라 가다가 현재로 다시 돌아오는 구성을 하였고, 또 어떤 경우는 기억의 큐를 중시하면서 연대기적 구성을 혼합하고, 또 다른 경우는 증언자의 설화적 특성을 부각하는 등 여러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

## 3) 구술적 텍스트로서의 증언집

증언4집의 증언텍스트가 외견상 가지는 일차적 특징은 '무수히 열리되 닫히지 않는 따옴표들'(증언자의 마지막에 닫힌다)이다. 이 따옴표는 증언내용이 편집자의 말과 단어로 가필되지 않았고 증언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성되었음을 알려준다. 앞 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증언을 받는 활동은 온 몸과 귀와 마음을 열고 증언자의 말과 침묵, 그리고 몸짓을 듣는 행위이다. 우리의 따옴표는 증언자가 말하고 있음을, 지금 현재 독자에게 말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독자로 하여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의 증언참여자가 되기를 촉구하는 기호이다.

그러나 기호의 이러한 표면적인 의미는 더 깊은 이론적 쟁점에 맞닿아 있다. 증언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

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증언자의 주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우리는 증언자의 말을 인용해야 하는 것일까? 가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석하는 시선이 없는 게 아니며 이미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용의 형식은 참여자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는 게 아닌가? 증언자의 말로 증언을 구성한다는 것은 이른바 '있는 그대로의 생생한 체험'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다고, 증언자를 보고 있는 참여자의 시선을 없애기 위함도 아니다. 우리는, 말을 사실 그 자체나 진실로 환원하는 경험주의적 방법론에 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입증된 사실'에 부합하는 말만 타당한 증언으로 채택하여 가필하는 실증주의적 방법론 양자 모두에 대해 거리를 두고자 한다. 우리가 증언자의 말을 신는 이유는, 증언자가 자신의 말을 통해 스스로를 재현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증언텍스트는 단지 녹취록을 그냥 옮겨놓은 게 아니라 증언참여자의 의도적 선택을 거쳐 편집된 것들이다. 우리는 이 선택을 일종의 내부적 외부자로서의 위치에 서서 행하고자 했다. 몇 가지 성긴 이론적 틀로 증언을 재단하지 않고 증언자의 고유한 정신과 기억에 들어감으로써 그 목소리를 체득하는 과정, 그와 동시에 그 자기재현을 바라보는 거리를 인식하는 내적 외부자로서의 시선을 명료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증언텍스트는 녹취의 수록이 아니라 생산된 증언물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의 따옴표들은 자신이 증언이 된 증언참여자(이자 편집자)를 통해 울려나오는 증언자의 목소리들을 의미한다.

증언자들의 목소리를 울려나오게 하기 위해 우리는 증언을 구술적 텍스트로 만들고자 했다. 구술적 텍스트란 말과 구술상황을 문자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구술상황에서의 말은 도치나 생략이 많고, 간투사도 많다. 증언텍스트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읽어가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는 간투사들은 생략하였으나 말의 장단과 운율을 가능한한 훼손하지 않으려고 했다. 또한 사투리의 발음도 표준화된 표현법이 정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리나는 대로 적었고, 억양과 말의 길어도 기호를 통해 표현하고, 몸짓과 표정, 또는 침묵을 괄호 안에 지문 형식으로 집어 넣었다. 그러나 구술을 문자기호로 온전히 담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스페이스나 단락나누기, 글자간격 등을 통한 각기 다른 구술 스타일 표현 시도)

대화 상황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증언자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문제. 증언활동은 대화적 상황이고, 따라서 대화 상황에서는, 알아듣지 못한 단어가 있을 때 물어볼 수도 있고 간단한 지시대명사가 일컫고 있는 복합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몇 번의 방문을 통해 알게된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다. 녹취록에는 증언을 받은 참여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나 단어들, 지시대명사들로 가득하다. 이러한 상황적





### 3 '생존자' 증언과 역사쓰기

우리가 '들었던' 증언, 재현하고자 했던 기억을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앞에서 지적한 대로 '위안부' 체험은 대체로 60여년전의 기억이라는 점, 아직 인생 경험이 성숙하지 않은 주로 10대의 경험이었다는 점, 그리고 귀국 후에도 침묵이 강요당한 그런 기억이다. 다시 말해, 잘 언어화되어 있지 않은 경험이고, 언어화된다 해도 이 생존자들을 다시 한번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한 많은 '피해자'로 낙인을 찍어 온 그런 기억이다. 이렇게, 생존자의 기억은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않은 비공식 기억이 되어왔다. 이것은 위안부의 증언이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담론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지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역사적 침묵을 깨는 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억의 내용과 기억하는 방식에는 다른 종류가 자료가 가지기 어려운 풍부하고 살아있는, 이 사회와 역사를 따라 구비구비 흘러온 의미가 내장되어 있다. 이것은, 생존자 증언이란 사실에 대한 '보충' 자료가 아니라 그 자체가 다른 종류의 역사적 자료라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해독되어야 할 수많은 기록이 암호처럼 새겨져 있고 그 의미는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숨겨져 있기도 하다. 거기에는 절규와 외침, 회한과 침묵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생존자 증언은 다각도로 그 의미가 부여되고 생성되어야 할 자료이다. 그것을 오로지 사실성의 잣대에 비추어 재단한다면,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협소해지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암호를 깨치면서 동시에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모색이다. 증언 4집은 그 하나의 모색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하층, 노인, 여성인 일제시기 '위안부' 여성의 증언은 일본의 국가적 군사적 자료를 의미하는 이른바 공식적 자료와 경합할 수 있는 '다른' 진실과 논리를 가진 역사적 자료이다. 이들 여성의 이야기는 이른바 '역사적 소수자'로서 탈식민주의에서 논하는 '지역적 역사쓰기'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와 상품뿐만 아니라 언어와 역사쓰기마저 중심을 향해 통합되어 온 근대화 과정에서 '공식적 역사'에서 배제되어 온 수많은 역사적 주변인들이 존재한다. 특히, 식민지 경험을 가진 제 3 세계의 역사가 그 동안 누구의 잣대에 의해, 누구의 입장에서 서술되어왔는가 라는 질문이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다. 기

결과 우리가 중요하게 견지했던 것은 증언자의 이야기 스타일과 개성을 살리는 것이다. 증언자의 구술적 특성을 살리되 대화상황에 참여하지 않은 독자를 향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편집의 방식을 찾아내라. 이것이 우리의 녹취 편집의 원칙인 셈이다. (proof reading 거침)

준과 입장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주변부 사회의 역사적 주체들의 기억이 사실상 사멸해 간다는 데에 있다. 기억을 담지한 '생존자'가 사라져 가며, 생존한다고 해도 그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사라져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존자 전 '위안부'의 증언은 여러 차원에서 귀중한 자원이다. 일제시기를 거쳐 한국전쟁, 독재와 급속한 산업화라는 역사를 거쳐 오늘 생존해 있는 전 '위안부' 여성은 이러한 역사의 궤적이 증첩되어 있는 자리에서 있다. 그 자리에는 식민지 한국인, 여성, 주변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민중이라는 노선이 미로처럼 얽혀 있다. 이 점에서, 이들 여성들을 주체로 하여 '위안부' 사건을 재현한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쓰기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기억의 코드를 재현함으로써, 이들의 중층적 주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결국 이들의 목소리는 스피박(G. Spivak)의 말대로, 아무리 말하여도 그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말되지 않는 언어'의 성격을 가지며, 그런 점에서 말이 곧 침묵이라는 역설을 담고 있다. 앞에서 다룬 것처럼, 생존자의 이야기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기억의 묶음들로 뿔어져 있다. 하지만 만남의 시간을 거듭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자신만의 혼(spirit)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친숙한 학문적 진실과, 문자적 논리와,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이라는 이론과 거리가 있지만, 그것을 재조명해 줄 수 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증언집은 어떠한 '이론'에 의해 선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론'을 모색하는 작업으로서 증언의 '목소리'가 들리게끔 하였다. 이들의 집합적 목소리가 증언을 읽는 이들 속에서 웅얼거리게 되기를 바란다. 사실상, 10만을 헤아리는 한국인 위안부의 잠정적 통계를 감안할 때, 현재의 생존자는 구사일생보다 훨씬 더 희소한 확률 속에서 살아남은 끈질긴 생존력의 화신들이다. 대다수의 전 종군 위안부는 연행과정에서, 위안소에서, 2차 대전의 전장에서, 또 일본의 패전 후 귀환하는 과정에서, 또 한국에 돌아와서 6.25 기간 및 그 이후에 돌아가셨다. 그런 점에서 이 증언을 남기시는 생존자들은 문자 그대로 역사의 '증인'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이름 없이, 현재까지도 그 의미가 잘 새겨지지 않은 채 죽어간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 증인인 것이다. 따라서 돌아가신 이들이 빙산의 울림을 생존자의 소리를 통하여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렇게 돌아가셔서 말할 수 없는 자들의 말과 기억을 대변하여 주는 말로 우리는 생존자 증언을 이해하였다. 그래서 더욱 이러한 증언이 소중하며 그러한 증언을 해 주신 증인들께 감사를 드린다. 기억 자체가 아픈 그런 기억을 떠올려서, 자신의 이름과 모습을 밝혀 증언을 해 주었던 용기와 진실함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증언집을 꾸민 우리의 목

소리가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용해되기를 바라듯이, 그리고 면접의 상황에서부터 증언이 주도권을 가지고 '말하게 하라'고 하였듯이, 증언집은 온전히 증인들의 것이다. 더 나아가 증언집은 증인들의 대변하고 있는 수 없이 죽어간 한국인 위안부 여성들, 식민지 피해자들, 지난 한 세기의 격랑속에서 소리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한국 여성들의 언어가 되고자 한다.



##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육체적 후유증에 대한 연구

이수현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수료)

### 1. 일본군 위안부 당시의 육체적 피해

#### 1) 고문 및 구타, 총검을 이용한 폭력

강제적 성관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일본군은 고문을 자행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다. 식민지 피지배계급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장치는 전무하였으며, 고문의 책임을 묻는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고문행위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쇠고챙이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고문을 하며 학대하거나(이영숙, 증언집 1집 62쪽), 시뻘겋게 달구어진 인두 모양의 불쏘시개를 가지고 들어와 겨드랑이를 지져서, 그 상처로 석달 동안 고생했고(문필기, 증언집 1집 114쪽), 전화코드를 잡아 빼서 손목, 발목을 감아 전기고문을 했다(이용수, 증언집 1집 127쪽).

위안부를 관리하는 위안소 주인이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일본군은 일본군 '위안부' 여성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폭력과 구타를 일삼았다. 가시적인 폭력은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로 하여금 탈출이나 저항 등의 자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고, 전시 위안소의 엄격한 규율체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증언한 모든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은 당시 폭력에 의한 피해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말을 안 들으면 심하게 때렸다. 나도 아랫도리를 많이 맞았다. 관동에 간지 얼마 안되어 그런 군인들 중 하나에게 나는 허벅다리를 칼에 찔렸다. 몇 번이나 달려드는 것을 내가 거부하자 그렇게 된 것이다. 군인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으면서도 손님은 계속 받아야 했다(이순옥, 증언집 1집 174쪽).

군인을 받다가 못건디어 도망가다 붙잡혀서 매도 술하게 맞았다. 그때 하도 맞아서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고 몸통이에 성한 곳이 없다(이상옥, 증언집 1집 189쪽). 한번은 못된 육군 졸병이 내 가슴, 팔, 발을 칼로 찔러서 병원에 입원

하여 치료했는데, 그 상처자국은 지금도 있다(이상옥, 증언집 1집 192쪽).

잡힌 후에 총검으로 엉치를 세대나 얻어맞고 앞으로 고꾸라져 입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맞아서 폭 패인 엉치의 상처가 굼아서 열이 펄펄 나 똑바로 드러놓지도 못했다. 그 런데도 군인들을 계속 받게 하였다. 살은 자주 굼아서 썩어 들어갔다(윤두리, 증언집 1집 294쪽).

그 집에서는 한 명이 잘못하면 군대식으로 전부 맞았다. 무릎을 꿇어앉으라고 했고 주인과 우리를 관리하는 일본 여자가 허벅지 위를 몽둥이로 때렸다. 손님한테 보이지 않도록 그 부위를 때린 것이다. 너무 아팠다. 까맣게 줄이 생겼다. 내가 잘못해서 맞는 게 아니라 여자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술을 많이 먹고 장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열이고 스물이고 모두 때렸다. 지금 귀가 멀게 된 것도 그 때 맞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박두리, 증언집 2집 37쪽).

내가 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더니 총대로 내 왼쪽 어깨를 때리는 것이었다. 지금도 왼팔을 높이 올리지 못하고 종종 아프다. 거기서 생활한지 5~6개월쯤 지났을 무렵 한 졸병이 샷쿠를 안 끼려고 했다. 내가 병이 걸린다고 끼라고 했더니 그 군인이 단도로 내 오른쪽 사타구니 부근을 찔렀다(여복실, 증언집 2집 202쪽).

일본군에게 맞아 치아가 남아있지 않다거나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등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인체 침습이 가해졌다는 진술을 통해, 당시 여성들은 인간이라기 보다는, 오로지 성노예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생식기 관련 질병 초래

수년에 걸쳐 셀 수 없이 많은 일본군이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녀들을 성적으로 착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임질이

나 매독 등 성병(Sexual Transmitted Disease)에 걸리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나, 이에 대한 치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단기적 치료를 위해 사용되었던 606호 주사(salvarsan) 역시 주사 직후 구토와 오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어린 시절 성적 학대의 경험은 당시의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긴다. 성병에 걸린 상태에서 의도치 않은 임신할 경우 유산할 수 있으며, 매독균이 다음 세대로 유전되어 정신질환을 초래하는 등 세대에 걸친 피해로 연결되기도 한다.

하도 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얼마 안되어 몸살 병이 들었는지 밀이 시뻘겋게 통통 붓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 병든 상태에서 계속 군인을 받았다. 한번은 어떤 놈이 바지를 내리고 덤벼들려고 하다가 시뻘겋게 된 내 밀을 보고 뭐라 욕지거리를 하고는 못 같이 뽀족한 것을 가지고 밀을 찔러버렸다. 거기에 병균이 옮겨 번져서 고름과 피가 범벅이 되었는데도 그냥 누워 군인을 받았다(최명순, 증언집 1집 265쪽).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죽었다고 했다. 꺼내보니 사내아이인데 얼굴부터 몸 반쪽이 이미 썩어 있었다. 의사는 병균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됐다고 했다(최명순, 증언집 1집 267쪽).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사타구니 양쪽이 툭 터져서 그냥 피고름이 나왔는데, 자궁 내에 생긴 고름이 썩은 후 부풀어서 저절로 터진 것이다. 다리도 부었다. 밀이 뒤집어져서 대소변도 못 봤다(강무자, 증언집 2집 59~60쪽).

가족에게조차 자신의 일본군 '위안부' 경험을 숨겼던 한 여성은 혼인한 딸이 산전검사를 하다가 매독균이 발견되어 심각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였고, 다른 여성은 자신의 매독균이 유전된 아들이 지금까지도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 3) 낙태

자연유산이나 임신중절수술을 거듭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은 귀국 후 임신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물론 당시의 반복적 낙태와 유산으로 인해 불임상태가 초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군 '위안부' 여성은 건강한 여성으로서 가임 기간 내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이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강제된 반인권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혼인 및 가임기를 비정상적으로 보낸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이 귀국 후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것만큼은 명백하다.

장교들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동안 임신한 여자들이 많았다. 임신이 된 줄도 모르고 있다고 606호 주사를 맞으면 몸이 붓고 으시시 추우면서 하혈을 했다.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가 자궁 속을 긁어냈다. 이렇게 서너번 긁어내면 임신은 더 이상 되지 않았다. 여자들은 1년만 있으면 성한 사람이 없게 된다. 대개 임신을 두세 번 하고 병도 많이 걸렸다(황금주, 증언집 1집 99~101쪽).

만주에 가서 한 일 년쯤 지난 후 한번 임신했는데 3~4개월 무렵 주사를 놔서 떨어뜨렸다. 사람 모양 같은 핏덩어리가 나왔다. 그리고 나서는 임신하지 않았다(김춘자, 증언집 2집 156쪽).

임신했지. 많이 뺏어. 주인이 나를 민간 병원에 데리고 가서 때내야 눈치 안 나게 때내. 낳으면 자기 손해잖아. 니 애 낳아 갖고 어떻게 살 건데 그래. 많이 뺏어. 여자 중에 임신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어(김옥주, 증언집 3집 103쪽).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는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입각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가 아니다. 하물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이 당시 경험으로 인해 남성을 대하는 태도, 성관계에 대한 가치관 등 경직된 심리 상태나 생식기 관련 질병이나 낙태의 경험을 가진 신체적 상태가 결합되어,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4) 자살시도 및 그 후유증

비인간적 생존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개인적·집단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자살한 사람들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정황을 짐작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의 정도를 파악해 보겠다.

한번은 술을 먹고 내 신세가 처량하여 3층에 올라가 투신한 적도 있다. 팔로 머리를 감싸친 채 떨어졌는지 왼쪽 팔과 어깨쪽지빠를 심하게 다쳤다(문옥주, 증언집 1집 161쪽).

우리 중에 누가 "술이다, 술도 많이 먹으면 죽는다더라. 우리 한번 먹어보자"고 해서 우리는 그 뼈갈을 나눠 마셨다. 술로 엉망이 된 우리들은 사흘 동안 의식불명상태로 있다가 깨어났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속은 헤져서 밥을 제대



로 먹을 수가 없었다. 이런 상태가 석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 때 속을 버린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소화가 제대로 안 된다(김복동, 증언집 2집 90쪽).

자꾸 여러 사람을 상대하니깐 휴 몸서리가 나고 소름이 끼치고, 아이고 차라라 내 이리 사느니 죽는기 나아. 약도 사러 갈 수도 없는기고, 말라리아 약이라고 거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거든. 말라리아 약을 많이 줘. 한 번에 두 개 먹는, 그것을 사오십 개 먹어버렸어(김옥주, 증언집 3집 108쪽).

어린 시절 성적학대의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는 많다(Bedsley LS et al, 1999; Santa Mina EE, et al, 1998). 이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기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는 반사회적 행동장애를 보이거나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자학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일부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은 어떤 사회적 지지체계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절망과 굴욕을 견디지 못한 채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 5) 전시 상황의 위협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은 전쟁을 수행 중이던 일본군의 이동에 따라 이주했고, 많은 경우 전쟁터 인근에 위안소가 존재했기 때문에 전쟁 그 자체가 야기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비행기 폭격은 집단학살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러나 전혀 대비할 수 없는 위협요인이었다.

#### 6) 전염병과 풍토병 감염의 위협

일본군 '위안부' 여성이 배치되었던 지역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전 지역, 대만, 사할린, 당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지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타이,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마리아나, 캐롤라인, 마셜, 뉴브리튼섬 등 태평양 도서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분포한다. 갑작스럽게 바뀐 식생활과 주거환경 등의 영향, 영양실조에 걸릴 만큼 굶주린 상태에서 전염병이나 풍토병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예방접종은 물론이고, 발병 후 치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 7) 살바르산(salvarsan) 주사의 후유증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군은 매독, 임질 등 성병치료를 위해 606호 주사(salvarsan)를 정기적으로 투여했다. 비소(arsenics) 제재로 만들어진 salvarsan 주사는 투여한 직후 급성구토, 오심, 복통, 피가 섞이는 심한 설사, 근육경련, 안면부족 등을 초래할 수 있다(Andrew MP eds,

1995, 131-161쪽).

이는 당시 매독에 걸려 606호 주사를 맞은 후 '사흘동안 하늘이 뱅뱅 돌고 속도 메스껍고, 월경도 한 달씩 건너했다(진경평 증언)', '그걸 맞고 나서 너무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손판임 증언)', '이 주사를 맞고 나면 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어질어질했다(김복동 증언)', 606호 주사를 맞으면 몸이 붓고 으시시 추우면서 하혈을 했다(황금주 증언)', 한번 맞고 나면 속이 울렁울렁하고 입과 코에 냄새가 올라와 역겨웠다(최명순 증언)는 등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과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살바르산 주사의 후유증을 짐작할 수 있다.

## 2. 현재 남아있는 육체적 피해

### 1) 잠복 매독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중앙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전체 53명 가운데 19명(35.9%)이 매독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냈다. 우리 나라 현혈자의 양성률이 0.3%, 신체검사자의 양성률이 0.8% 정도로 매우 낮고, 성병관리 대상자들의 양성률 역시 9~1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10대 초반 혹은 중반에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의 성경험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다수의 성적 파트너와 반복적으로 지속된 것의 결과로 보인다. 매독은 음부궤양(genital ulcer)이나 서혜부 임파선이상(inguinal lymphadenopathy)을 동반한다.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매독이거나 치료된 잠복 매독이라 하더라도, 이는 혈액검사를 수행할 때마다 매독양성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개인에게 사회적 낙인의 효과를 초래한다.

### 2) 외상

2000년 9월 인천사랑병원 정형외과에서 실시한 검진 결과, 조사대상 14명 가운데 7명이 당시의 구타 및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서는 앞서 살펴본 증언자들의 증언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증언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 S3) 정신신체적 장애(psychosomatic disorder)

인천사랑병원에서 조사한 14명 가운데 11명은 DSM-IV의 진단기준에 의한 만성적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Chronic)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GAAB, Stream of Mental activity, Contents of thought, Emotional Reaction, Mental grasp and capacity, MMSE 등 Mental Status Examination 등을

사례	병명	한국질병분류번호	비고
A	방치된 오른쪽 어깨 관절의 탈구 양측 난청	S430 H919	어깨 탈구는 일본군 '위안부' 시절(18세) 팔을 비틀리고 총검으로 맞아서 발생하였으며, 난청 역시 일본군 '위안부' 시절 귀를 맞아 생긴.
B	왼쪽 사타구니 흉터 오른쪽 무릎 흉터 B형 간염 보균자	S710 S810 K729	사타구니 상처는 일본군 '위안부' 시절 당시 칼로 찢린 부위이고, 무릎의 상처는 총알과 칼자국에 의한 것이며, B형 간염 보균 상태는 일본군 '위안부' 당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C	왼쪽 둔부의 흉터	S710	왼쪽 둔부의 흉터는 일본군 '위안부' 당시 칼로 찢리고 발로 চে여서 생겼다고 함.
D	좌측 제4수지 중위 지골 절단 상태	S681	왼쪽 손가락의 손상은 일본군 '위안부' 당시 얻은 것이라고 함.
E	오른쪽 정강이의 상처 (피부합물)	S817	이 상처는 중군 위안부 시절 도망가려다 붙잡혀 2주 동안 묶여 있었던 부위의 상처로, 당시 현대 등으로 구타당하기도 했음.
F	두피 상처 (두정엽 부위)	S010	두피 상처는 일본군 '위안부' 시절 칼집 썬 군도로 머리를 맞아 생긴 상처라고 함.
G	난청	H919	난청은 일본군 '위안부' 당시 온몸을 구타당할 때 귀를 맞아 생겼다고 함.

비롯, 표준화된 임상면접, 그리고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와 Impact of Event Scale, Rorschach 등의 심리검사를 수행하였다. PTSD로 진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A. (1) 일본군 '위안부' 시절 직접적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혹은 총과 칼을 가진 군인이나 군속들이 주위 동료를 구타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2) 이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를 경험했으며
- B. 일본군 '위안부' 시절 후에도 남자, 특히 군인을 보면 두려워하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신체적 반응이 있었다고 하며
- C. (1) 현재까지도 당시의 경험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고, (2) 그런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남자들과의 접촉을 피했으며, (3) 당시 경험의 많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4) 결혼과 같은 정상적인 삶에 대해 기대하지 않으면서 살아왔고
- D. (1) 귀국 후에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고 (2) 남자나 군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랐다고 한다.
- E. 위의 증상들이 수십 년간 반복·지속되었고
- F. 환자는 상술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적·직업적인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보여왔다.

당시의 충격적 외상(trauma)으로 인한 후유증은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포함하여, 만성적 두통이나 소화불량,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등의 신체적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외상적 사건이 신체화 증상을 포함한 인간의 원초적 방어기제를 촉발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아동기 성적 학대의 경험이 초래한 장기적 후유증(long-term sequelae)에 관한 연구문헌에 의하면, 성적 학대의 정도가 심할수록 생애과정에서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on disorder)나 공황 장애(panic disorder), 공포(phobia), 신체화장애(somatization disorder), 약물남용(drug abuse)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주요우울장애나 신체화통증장애(somatiform pain disorder)로 진단 받을 가능성이, 성적학대의 경험이 없거나 정도가 약한 사람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Walker E. A. et al, 1992).

유태인 대학살 생존자의 경우, 대학살 이후 40년이 지난 후에도 정서적 고통(emotional distress)이나 삶에 대한 만족감, 정신신체적 증상의 측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지배하에 있지 않았던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정서적 고통을 느끼고 있고 이와 관련된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Carmil D, 1986).

외상의 후유증에 의한 신체화 증상의 발현, 특히 성적 학대와 만성골반통(chronic pelvic pain)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많은 연구 가운데, 신경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한 연구에 의하면 만성적 스트레스나 성적 및 육체적 학대와 같은 외상적 삶의 사건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만성골반통을 경험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시상하부 뇌하수체의 아드레날 중추(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의 특정 부위가 대체되는 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Heim C. et al, 1998).

14명 중 확실하게 PTSD로 진단 내리기 어려운 3명의 경



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대화를 피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 수년 동안 약물 치료로 잘 호전되지 않고 원인이 잘 설명되지 않는 소화기 증상과 요통 등의 증상이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우울감과 불안, 흥미소실, 수면감소 및 수면장애, 자신에 대한 지나친 무가치감과 죄책감,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은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의심할 수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우울증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를 수행한 한 연구논문에서는 서구 사회에 비해 비서구 사회의 우울증이 정서적·정신적 증상보다는 신체적 증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우울증의 증상이 단순히 정서적·정신적 차원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피로와 식욕상실, 불면증, 통증에 대한 과도한 반응 등 신체적 증상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한다(Simon GE, et al, 1999).

#### 4) 흡연 관련 질환

상기 서울중앙병원의 건강검진 결과 53명 중 10여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본군 '위안부' 경험자들은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국내 60대 이상의 여성 흡연률이 20%를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일본군 '위안부' 당시 혹은 그 직후부터 10대, 20대의 나이에 흡연을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현재 흡연관련 질환이 많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8명, 기관지 천식 환자가 3명이었다. 흡연을 위험인자로 고려할만한 협심증과 폐암, 자궁경부암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생활 당시의 절박한 생존 조건, 스트레스와 긴장, 공포와 불안 등의 요인이 이들에게 흡연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참고문헌목록

- Andrew MP and David PR(1995), Arsenic Toxicity, 『Environmental Medicine』, National Academy Press.
- Bensley LS, et al, Schoder J(1999), Self-reported abuse histor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I. Antisocial and suicidal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Mar;24(3):163-72.
- Carmil D, et al(1986), Emotional distress and satisfaction in life among Holocaust survivors: A community study of survivors and controls, Psychosomatic Medicine, Feb; 16(1): 141-9.
- Heim C, et al(1998), Abuse-relat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alteration of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in women chronic pelvic pain, Psychosomatic Medicine, May-Jun; 60(3): 309-18.
- Santa Mina EE, et al(1998), Childhood sexual and physical abuse and adult self-harm and suicidal behaviour: a literature review,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Oct;43(8):793-800.
- Simon GE, et al(1999), An international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somatic symptoms and depression,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Oct; 341(18): 1329-35.
- Walker EA, et al(1992), Medical and psychiatric symptoms in women with childhood sexual abuse, Psychosomatic Medicine, Nov-Dec; 54(6): 658-64.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심리평가

이철원(아이맘@imam) 상담소 소장)

#### 서론

본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의 심리적 상태를 심리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일본군 '위안부'의 심리 상태에 대한 평가는 종전 이후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알아보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후유증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진단결과는 진상규명위원회 자료집과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법정」에 제출할 증거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로 생활한 경험은 일회적인 성폭력 피해에 비해 그 횟수와 기간이 현저하게 많기 때문에 그 피해나 후유증의 정도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일회적인 강간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증상은 공포감, 불안, 분노, 죄책감, 우울증, 집중력 장애, 수면장애 등을 보일 수 있고 갑작스러운 회상과 악몽을 꿀 수도 있다(박금자, 1997).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이러한 증상들을 경험했을 소지가 있다.

또한 강간 피해자들은 자아존중감의 상실을 보이고 합리화, 억압, 부인, 반동형성, 전치 등의 방어기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살시도, 약물중독 등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Burgess & Holmstrom, 1987). 이러한 증상들은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쳐 자기개념이 빈약해지거나 사회적 기술을 부족하게 하고 우울한 정서와 자살 충동, 적대감 등을 형성하게 한다(Rice, 1987). 또한 가정에서의 적응곤란, 타인에 대한 신뢰감 상실, 성생활에서의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증상을 경험하거나 피해 이후의 삶에 영향을 받았을 소지가 있다.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종전 이후에 경험한 증상에 대한 연구(Blank, Jr., 1982)에는 재향군인들이 전통적인 외상성 신경증 증후군인 악몽, 흥분, 격분, 불면 및 우울 등을 경험하거나 두통, 요통, 위궤양, 편두통 및 고혈압 등의 정신신

체 증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적대감, 의심, 편집증 및 군중 공포증과 같은 편집증 상태를 보이거나 약물중독, 충동적인 행동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성격장애, 자살시도 및 환청,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도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삶의 과정에 영향을 미쳐 교육과 직업에서의 성취를 저하시키거나 직업, 학교, 거주지 등을 목적 없이 자주 바꾸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배우자와의 친근한 관계형성이 어렵거나 시민으로서의 정체감을 상실하고 결혼, 사회기관, 지역사회,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고 이탈되어 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자아상과 인간성이 붕괴되고 죽음과 무의미한 슬픔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재향 군인들과는 달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끌려와 자유로운 행동이 금지되고, 목적이 없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성노예로서 수년간을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욱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후의 삶이 보다 부적응적이고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정신과 환자를 진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DSM-IV)'에 기술되어 있는 외상성 사건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타인의 죽음, 상해, 신체 검강을 위협하는 사건의 목격; 가족이나 친지의 예기치 못한 무자비한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및 이들이 경험한 죽음이나 상해에의 위협을 알게 되는 것 등이다.

그 구체적인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의 진단기준

### A. 외상성 사건을 경험했던 개인에게 다음 2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난다 :

- (1)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가져다 주는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직면하였을 때
- (2) 개인의 반응에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이 동반될 때 주의: 소아에서는 이런 반응 대신 지리멸렬하거나 초조한 행동을 보인다.

### B. 외상성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식 가운데 1가지 (또는 그 이상)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재경험할 때 :

- (1)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회상(영상이나 생각, 지각을 포함)  
주의: 소아에서는 사고의 주제나 특징이 표현되는 반복적 놀이를 한다.
- (2)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괴로운 꿈  
주의: 소아에서는 내용이 인지되지 않는 무서운 꿈
- (3) 마치 외상성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이나 느낌(사건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지각, 착각, 환각, 해리적인 환각 재현의 삽화들, 이런 경험은 잠에서 깨어날 때 혹은 중독 상태에서의 경험을 포함한다.  
주의: 소아에서는 외상의 특유한 재연(놀이를 통한 재경험)이 일어난다.
- (4) 외상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심각한 심리적 고통
- (5) 외상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의 생리적 재반응

### C. 외상과 관련되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려 하거나, 일반적인 반응의 마비(전에는 없었던)가 다음 중 3가지 이상일 때:

- (1) 외상과 관련되는 생각, 느낌, 대화를 피한다.
- (2) 외상이 회상되는 행동, 장소, 사람들을 피한다.
- (3) 외상의 중요한 부분을 회상할 수 없다.
- (4) 중요한 활동에 흥미나 참여가 매우 저하되어 있다.
- (5) 정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예: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
- (6) 미래가 단축된 느낌(예: 직업, 결혼, 자녀, 정상적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

### D. 증가된 각성 반응의 증상(이상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이 2가지 이상 있을 때 :

- (1) 잠들기 어려움 또는 잠을 계속 자기 어려움
- (2) 자극에 과민한 상태 또는 분노의 폭발
- (3) 집중의 어려움
- (4) 지나친 경계
- (5) 악화된 놀람 반응

### E. 장애(진단 기준 B, C, D)의 기간이 1 개월 이상이다.

### F. 증상이 임상적으로나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4 판, 이근후 외 역(하나의학사, 1995)>에서 옮김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의 경우도 강간이나 전쟁 참가 등에 못지 않은 매우 심각한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삶 전체가 고통을 받았을 소지가 다분하다.

일본군 '위안부' 경험이 외상(trauma)으로 작용하고 이후의 삶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일본군 위안부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인생에서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신뢰와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DSM-IV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분석, 진단함으로써 피해자 개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피해보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도움이 절실하다는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방법 및 절차

### 1. 연구기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는 1999년 2월부터 1999년까지 11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 2. 연구대상

대상은 서울, 경기 및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15명이었다.

### 3. 연구도구

#### 1) 면담

위안부 개개인을 대상으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주된 심리적 증상과 증상의 경과, 증상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면담결과는 심리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

#### 2) 심리 평가 도구

가) 벤더-게스탈트 검사(Bender-Gestalt Test; Bender, 1946)

나) 집-나무-사람그림 검사(House-Tree-Person Test; Buck, 1948)

다) 한국판 웨슬러 지능검사(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중앙적성연구소, 1963)

라)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 한국가이던스, 1989)

마) 로르샤하 검사(Rorschach Test)

### 4. 연구 절차

각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는 정신대 대책 협의회 사무실과 퇴촌에 소재하고 있는 나눔의 집, 대구의 경우에는 피해자 집에서 2명의 임상심리전문가와 1명의 임상심리수련생에 의해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다면적 인성검사의 경우,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응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2명의 자료만 얻을 수 있었고 다른 검사는 모든 사람이 수행하였다.

## 결과

### 1.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분석

심리평가를 받은 일본군 위안부의 연령은 만 70세에서 83세의 분포를 보였다. 학력은 무학에서 중졸까지 다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령 분포

연령	70세	71세	72세	73세	74세	75세	76세
인원(명)	1	0	1	0	4	0	1
연령	77세	78세	79세	80세	81세	82세	83세
인원(명)	1	2	1	0	0	0	1

<표 2> 학력 분포

학력	무학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졸
인원(명)	9	5	0
학력	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
인원(명)	1		0

### 2. 지능지수 분석

피해자의 지능검사는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표준화된 연령이 64세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아 보간법에 의해 지능지수를 간접적으로 산출하였다. 지능지수는 보통수준이 89에서 111사이이며 보통하 수준은 79-88, 경계선 수준은 70-78, 보통상수준은 112-120, 우수수준은 121-127, 최우수 수준은 128이상이고 정신박약은 69이하인 점수가 해당된다.

각 피해자의 지능지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피해자의 지능지수 분포표

지능 수준	정신 박약	경계선	보통하	보통	보통상	우수	최우수
인원 (명)	0	0	6	5	4	0	0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지능수준은 보통상에 속하는 사람이 4명, 보통수준에 속하고 있는 사람이 5명 및 보통하 수준에 속하고 있는 사람이 6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의 학력이 무학이고 초등학교 중퇴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분포는 피해자들의 인지적 잠재력이 우수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며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현재보다 개선된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3. 증상에 따른 분류

〈표 4〉 DSM-IV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기준에 따른 분류 결과

진 단 기 준	최우수
A. 외상성 사건 (1) 죽음, 상해 및 위협적 사건 경험, 목격 (2) 공포, 무력감, 고통 동반	15 (100%) 6 (40%)
B. 외상성 사건의 재경험 (1) 사건의 반복적 회상 (2) 괴로운 꿈 (3) 재발 행동이나 느낌 (4) 단서 노출 시의 고통 (5) 단서 노출 시의 생리적 재반응	9 (60%) 12(80%) 8 (53%) 8 (53%) 10(66%)
C. 자극 회피 및 반응 마비 (1) 생각, 느낌, 대화 회피 (2) 행동, 장소, 사람 회피 (3) 중요 사건 회상 불가 (4) 흥미, 참여 저조 (5) 정서 범위 제한 (6) 미래 단축 느낌	7 (46%) 7 (46%) 2 (13%) 9 (60%) 9 (60%) 2 (13%)
D. 증가된 각성 반응 (1) 수면 곤란 (2) 과민, 분노 폭발 (3) 집중 곤란 (4) 경계 (5) 놀람 반응	12(80%) 11(73%) 14(93%) 8 (53%) 10(66%)
E. 1개월 이상의 장애 기간	15(100%)
F. 사회적, 직업적 장애 정도 (1) 매우 심각 (2) 심각 (3) 보통 (4) 적음	5 (33%) 8 (53%) 1 (6%) 0 (0%)

피해자의 증상은 서론에서 고찰한 것처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면담과 심리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DSM-IV의 분류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들을 나누어 보았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검사자의 100%가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였다. 또한 평균적으로 62%의 피해자가 외상성 사건을 재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생활과 관련된 괴로운 꿈을 꾸는 경우가 80%로 가장 높았으며 위안부와 관련된 단서에 노출되는 경우에 생리적인 재반응을 보이는 경우(66%)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안부 생활이 외상으로 작용하여 중요한 활동에 대한 흥미나 참여도가 저하되어 있으며(60%),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등의 정서적 제한도 60%의 피해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증가된 각성 반응중에서는 주의집중의 곤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93%), 수면곤란(80%)과 자극에 과민하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반응도 높게 나타났다(73%).

이러한 외상적 경험으로 인하여 현재 사회적이거나 직업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장애를 받고 있는 사람은 5명(33%)으로 나타났으며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받는 사람이 8명(53%)로 나타나 피해자의 86%가 사회적, 직업적 적응에 실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 4. 심리평가 결과에 대한 질적 분석

각 피검자의 심리평가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Blank, Jr.(1982)가 제시한 후유증의 범주와 임상심리학적 평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진단 범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 수준에서 볼 때 피험자 모두가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가 우울감과 무기력감 및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피해자들이 두통, 편두통, 요통, 위궤양, 고혈압, 관절염 등 다양한 정신신체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상은 피해자가 위안부 생활을 마친 후 건강관리가 매우 소홀했음을 시사해 줌과 동시에 심리적인 고통을 신체증상을 통해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상이 주는 충격으로 인하여 엔돌핀의 분비가 감소했을 소지가 많으며 이로 인해 만성 통증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대한 신심스트레스 학회, 1997).

셋째, 대인관계 상황에서 적대감을 경험하거나 의심이 증가하고 타인의 의도를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애정교류나 지속적인 접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경험하면서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넷째,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과 흥분, 짜증, 신경질과 같은 정서반응을 많이 할 소지가 시사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반응들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이 준 외상적 경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상적 경험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역할 수행의 기회가 줄어들고 결혼을 하거나 직업을 가질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이차적으로 나타난 증상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섯째, 피해자들의 자아강도(ego strength)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어 현실검증기능이 약화 내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르샤하검사를 통해 평가한 자아강도를 살펴볼 때 외부 자극에 대한 지각적 정확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고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피해자에서는 기억력 저하와 주의집중의 곤란, 지남력 상실과 같은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의 내적인 욕구에 의해 사물을 왜곡하여 지각하거나 비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형식적 사고 장애(formal thought disorder)를 보이거나 망상 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사고내용을 보일 소지가 시사되었다. 이러한 증상은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대화나 문제해결에 지장을 초래하고 전반적인 적응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질적인 분석에서 볼 때 정서적으로는 우울 장애나 불안 장애, 신체화 장애 등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피검자가 있었다. 또한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편집증적 성격 장애, 히스 트리오티크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및 반사회적 성격장애, 회피성격장애로 진단될 사례가 있었다. 일부 피검자에서는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외상후 스트레스에 의한 것일 소지가 많아 보인다.

### 논 의

피검자들의 심리평가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DSM-IV의 진단기준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의 기준에 15명의 피해자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인 잠재력이 보통하에서 보통상 수준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로의 강제 징집과 외상과 관련된 후유증으로 인하여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인 장애와 성격상의 문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및 다양한 정신신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평가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만성적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강도가 약해지고 사고과정에 장애가 나타나고 있으며 치매 증상을 보이거나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회적인 성폭력 피해에 의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외상 경험이 피해자들의 인생에 매우 부정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의 부적응은 물론 이성과의 관계 형성곤란, 성적 기능 저하, 가족을 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자신의 상처를 과잉보상하기 위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자기 평가 등의 부적응적인 행동양상이 발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적응적인 행동양상은 결국 인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기쁨을 경험하는데 많은 제한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삶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지금부터라도 적응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개인 혹은 집단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체적 측면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배려와 사회적인 지지망의 구축도 절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대한 신심스트레스 학회(1997). 스트레스: 과학의 이해. 서울: 신광출판사.
- 박금자(1997). 성폭력 상담의 의학적 상식. 보건복지부 성폭력전문 상담원반 교육자료집. 이근후 외 14명 역 (1995).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판. 서울: 하나 의학사.
- Bender, L. (1946). Instructions for the use of the visual motor gestalt test. New York: American Orthopsychiatric Association.
- Blank, Jr. A. S. (1982). Stress of War: The example of Viet Nam. In L. Goldberger & S.
- Breznitz(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ew York: The Free press.



- Buck, J. N. (1948). The H-T-P technique: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coring manual.
- Clinical Psychology Monographs, 5, 1-20. Burgess, A. W. & Holmstrom, L. L. (1987). Adaptive Strategies and Recovery from rape. In R. H. Moos and J. A. Schaefer(Eds.), Coping with life stress: An integrated approach. New York: Plenum Press.
- Rice, P. L. (1987). Stress and Health: Principles and practice for coping.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침묵과 사회적 후유증: 귀국 이후의 삶을 중심으로

심영희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 1. 문 제 : 50년간의 침묵

소위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는 역사에 유례가 없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 폭력이나 여성의 인권에 대한 위반일 뿐 아니라 또한 일본정부와 군대라고 하는 국가권력에 의한 집합적이고 체계적인 위반이기도 한 충격적인 사례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본정부가 그 관련을 계속 부인해왔으며 1992년에 와서야 그 관련을 시인했다는 것이다.

소위 일본군 '위안부'들 - 이는 일본군의 즐거움을 위해 성노예가 되도록 강요당했던 여성들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 은 50년간 침묵을 지키다가 최근에 와서야 앞으로 나서서 그들이 고통을 겪은 전쟁 잔학 행위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다. 왜 그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을까? 왜 그들이 말할 수 있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이 연구는 소위 일본군 '위안부'들이 한국에 귀국한 이후의 삶을 드러냄으로써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해보려는 시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 1) 귀국 이후의 삶은 어떠했고 후유증은 무엇이었는가?
- 2) 왜 이 여성들은 지난 50년간 침묵을 지켰는가?  
왜 그토록 말하기가 어려웠는가?
- 3) 침묵의 효과 또는 후유증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 4) 그들은 침묵으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등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필자는 여섯 분의 위안부 할머니들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언집의 사례들을 참고하였다. 참고로 2000년 4월 현재 총 신고자수는 199명이고 (귀국후 국적취득자, 사망자 포함), 이중 증언자수는 48명 (증언집 1, 2, 3집에 증언 수록된 분 포함, 중국 거주자 증언집에 수록된 10명은 포함 않음)이다. 면접대상 6분은 이들 중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살고 비교적 활발한 증언활동을 해온 분들이다. 면접은 1999년 3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되었고, 보통 2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면접대상자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면접사례들의 특징

사례	나이 (출생연도)	끌려갔을 때의 방법	성노예 장소 및 기간
1	79 (1922)	강제연행	중국 길림
2	74 (1925)	취업사기	중국 만주
3	73 (1926)	취업사기	1년 6개월
4	73 (1926)	취업사기	버마
5	73 (1926)	팔림	중국 훈춘 3년
6	76 (1923)	취업사기	중국 해남도 5년

### 2. 귀국후 생활 : 고향/가족, 생활, 결혼/성/재생산의 면에서

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귀국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귀국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고향/가족과의 단절문제, 생존조차 어려운 생활환경, 정상적 여성으로서의 삶 불가능 등이 심각한 문제였다.

그들은 귀국해서 어디로 갔나? 전쟁이 끝나서 다행히 귀국한 일본군 '위안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들이 귀국했을 때 이들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면접한 6명 중 4명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두 명만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표 2> 참조). 당시는 아직 전통적 농업 사회로서 가족과 고향이 생활의 터전이고 젊은 여성이 타



지나 도시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첫째, 고향에 가까운 가족이 없었던 사람들은 고향에 가보았자 먹고사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고향에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그들은 대부분 배로 부산에 도착하거나 했기 때문에 고향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사례 1, 3).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탄 데로 간 사람들이 그 중 많았다는 것이다 (사례 1, 3, 4, 5).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알아볼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면 고향으로 간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 고향으로 돌아간 두 명(사례 2, 6)도 고향에 머무르지 않고 떠돌아다녔다. 왜 그랬을까? 그들 중 일부는 찢어진 몸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결혼하라는 가족들의 압력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례 2). 다른 사람들은 '위안소'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마주칠까 봐 두려워했다 (사례 6). 그리하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들 여성들은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며 사는 '뿌리 뽑힌'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가족연결망, 친구관계 등이 모두 단절되어 버린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태에서 가족은 더이상 가족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의 정은 더욱 소중하고 그리워지는 것이 인정한 모양이다. 어떤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혼자서도 먹고살기 힘든 상황이지만 6.25 전쟁 때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분도 있었고 (사례 1), 조카를 어렸을 때부터 데려와 키워 친아들처럼 의지하고 지내는 분도 있었다 (사례 2).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젊은 여자로서 혼자 살기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었지만 어린애들을 데려와 키운다는 것이 대단한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한 일임에도 그리 했음을 볼 때 이들이 얼마나 가족간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고향/가족과의 단절 외에도 이들이 부딪힌 또 하나의 심각한 어려움은 생존조차 어려운 생활환경이었다. 오랜 식민지배의 수탈과정으로 인해 당시 경제사정이나 생활환경이 전반적으로 몹시 피폐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이들 여성들은 생존조차 어려운 생활환경에 있었다. 그들이 귀국

했을 때 특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넘실거리는 망망대해 위에 일엽편주처럼 의지할 곳 없이 가련한 신세였다. 그들은 먹고살기 위해 닦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해야 했다. 당시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이 극심하게 제약되어 있던 사회적 상황에서 이들이 택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1950년에 터져서 3년간 계속된 한국전쟁 또한 이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했다.

그들이 생존을 위해 주로 했던 일을 보면 식당일, 술집 종업원, 식모 등과 같은 개인 서비스 업, 행상 등에 종사하여 간신히 먹고살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은 식당에서 일하거나(사례 1, 사례 2, 사례 4),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사례 2, 사례 3, 사례 5), 장사나 행상을 하거나(사례 1, 사례 3, 사례 5), 가정부로 남의 집살이를 하거나(사례 4, 사례 5), 약초를 캐는 등 농사에 종사하거나(사례 6) 했고, 절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 (사례 5).

또한 이들이 정상적 여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자 고통이었다. 당시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이 극심하게 제약되어 있던 사회적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하여 아기를 낳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 대부분은 다른 '정상적 여성들' 처럼 결혼하거나 아기를 낳지 못했다. 면접대상자 6명 중 4명이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몇 안 되는 결혼한 여성들은 매우 나이가 많은 노인과 결혼하거나(사례 3), 이미 결혼해서 부인이 있거나 상처하고 애들이 딸린 사람과 결혼(사례 6)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사람은 그 중 둘이었다.

이처럼 다른 보통 여성들처럼 결혼하고 아기 낳고 '정상적' 여성으로서 살지 못한 것이 이들 여성들에게는 가장 큰 한이었고 고통이었다고들 말했다 (사례 2). 가부장제 사회에서 결혼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에도 일부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당시에는 해당하지 않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면관계상 사례들의 증언을 많이 인용하기가 어려워 <표 3> <표 4> 등 주로 표에 증언내용을 압축하여 제시하였음.

이렇게 볼 때 이들의 귀국 후 삶 전체가 '위안부' 생활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다.

### 3. 침묵의 효과와 후유증 : 초기, 장기적 후유증

위에서 논의한 귀국 후 삶은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그 자체가 '위안부' 생활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2> 면접사례들의 귀국후 생활과 후유증

	가족 및 고향	일	성	신체적 후유증	정신적 후유증
사례 1	고향 아닌 서울로 왔다 (고향 부여이나 이북에 살았음). 부모 없음.	식당, 막걸리장사, 성냥장사, 담배장사, 새마을일 (여동생 1명)	결혼 안 했음. 아이 못 낳았음. 6.25때 애 다섯 데려다 키움. 최근 호적 갈라줌.	하혈로 자궁수술 같이 있던 7명도 비슷한 증상으로 죽었다 ("자궁 썩어" 죽었다).	(배불기-밥도 안 먹고 말도 안하고 말아초만 피다 죽었다) 남자혐오
사례 2	고향집으로 돌아왔음 (경상도). 가족 있었지만 떠돌아다녔음.	식당, 술집 (마산), 새마을일	결혼 안 했음. 아이 못 낳았음. 6.25때 애 다섯 데려다 키움. 최근 호적 갈라줌.	옆구리 인두로 지졌음	악몽을 꾸다 시집 안 가려고 가출하여 떠돌아다녔음.
사례 3	고향 아닌 부산으로 돌아왔음 (고향 이북 평양). 남한에는 동기간 없다.	술집, 술장사, 야채장사, 빵장사	결혼했음 (34세에 60 몇 세이고 딸 넷 딸린 할아버지와) 딸 하나 낳았음.	발길로 차서 어깨뼈 비틀어짐 등 굵었고 귀안들림	남자 싫다.
사례 4	고향 아닌 인천으로 돌아왔음 (고향은 전남 광주). 부모 없고 큰아버지 댁에 있다가 끌려갔음. 광주에 사촌들 있다.	식당일 10년 (인천), 가정부 25년 (서울 부 교사집)	결혼 안 했음 어떤 남자와 살림을 차렸는데 알고 보니 처가 있는 사람이었다. 딸 둘 낳았음	오줌소태 관절염	
사례 5	고향 아닌 철원으로 돌아왔음 (철원은 고향은 아니고 전에 살던 곳). 조실부모, 세 자매 하나 죽고 하나 귀머거리	술집, 미계장사, 보따리장사, 남의집살이, 절에 들어감.	결혼 안 했음. 결혼하자는 사람 있었으나 처가 있었고, 남자는 자살했음. 딸 하나 낳았으나 7개월 때 죽었음.	몸이 성한 데가 없다. 수술 7번이나 했다 귀 잘 안 들림 고막 터져서	내 운명은 왜 이리 기구할까 6번이나 자살 시도
사례 6	대구 고향집으로 돌아왔음. 부모 9남매 중 다섯째	남편 고철장사, 강원도에 들어가서 약초 캐고 (40년간)	결혼했음. 상처했고 애 다섯 딸린 남자와. 남편자녀 돌보느라고 자기 자녀 안 낳았다.	칼 맞았음. 암수술했다 (담석증). 10년전	자꾸 떠돌아다녔다. 못살아서 위안부 갔다와서 절단났다.

보다 좁은 의미에서 후유증을 이야기하자면 신체적, 정신적, 인간관계적 측면의 후유증을 지적할 수 있다. 인간관계적 측면의 후유증은 앞절에서 가족관계망, 친구관계 등의 단절과 '정상적' 친밀성, 결혼관계를 이루지 못했다는 데서 논의했으므로 생략하겠다.

신체적 후유증은 의학적 진단결과에서 보다 자세히 드러나겠지만 말로 듣고 눈으로 확인한 것만 적으면 위의 <표

2>와 같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례 1의 경우 자궁이 썩어서 죽을 뻔하다가 수술을 받고 살아났는데, 그 여성이 해방후 위안소에서 탈출할 때 자궁이 썩어 도망도 나오지 못하고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던 위안부 피해자가 7명이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신적 후유증에 초점을 두고 초기의 후유증과 장기적 후유증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귀국 직후 초기의 후유증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본인들은 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모라토리움에서 현실세계로 돌아오는 것의 공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 여성들은 대체로 외국에서 그리고 일본 군대속에서 생활함으로써 한국의 사회관계와 담론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가치판단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일종의 모라토리움에 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다시 예전의 생활과 관계로 되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것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위안소에서 생활이 괴롭고 치욕적이긴 했지만 거기에서는 이에 대해 가치판단을 해줄 가족이나 친구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위의 눈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자 고통이었을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못들어오거나,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거나, 돌아오는 배에서 자살하거나, 돌아와서도 고향에 가지 못하거나, 고향에 가서도 사실을 말하지 못하거나 한 것은 바로 이 과정에서 그들이 겪은 고통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많은 여성들이 위안소생활에 대하여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면접대상자 6명중 어느 누구도 신고할 때까지 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억하나 침묵을 지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억을 억압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들에게는 정신적으로 많은 억압이 쌓여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것들이 한의 용어리가 되어 내부에 차곡차곡 쌓여갔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들은 침묵하고 잊기로 마음 먹었을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침묵하고 살다보니 먹고살기도 어려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를 조금씩 잊어갔을 수도 있다. 이것은 침묵하고 잊기로 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침묵이 장기화함에 따라 이들 여성들 개개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졌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위안부' 라는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못하고 집합기억에서 사라져가게 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침묵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후유증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크게 내향적 후유증과 외향적 후유증으로 나눌 수 있다. 내향적 후유증의 예는 말을 안 한다든지, 악몽을 꾸고 몸부림을 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엌에 가 있다든지 (사례 2), 세상을 기피한다든지

(사례 5), 극심한 경우 자살시도를 한다든지 (사례 5)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외향적 후유증은 주로 남자에 대한 혐오 (사례 1, 사례 3), 인간에 대한 불신 등으로 나타나고, 고향에 뿌리박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는 현상 (사례 2, 사례 6)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50년간의 오랜 침묵을 견디고 미치지 않고 산 것이 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침묵에서 오는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버릴 수 있게 해 준 것은 무엇이였을까? 다르게 말한다면 이들은 침묵에서 오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고 해결할 수 있었을까?

어떤 이들은 개인적으로는 술, 담배 등에 의존하거나 취해서 울거나 하는 방법 (사례 3, 사례 6), 이웃, 친구들을 사귀어 이들과 말하거나 (사례 4, 사례 6), 불쌍한 애들을 데려다 키우거나 친척 애를 데려다 키워 가족관계를 맺어 (사례 1, 사례 2) 이를 통해 마음속의 고통과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기도 (사례 4)나 종교에의 몰입 (사례 5), 일의 몰두를 통해 고통을 잊기도 했다. (<표 3> 참조)

그리고 증언을 하고 난 후에는 증언 그 자체가 고통을 해소해주는 기제가 되기도 하고, 정대협 운동에 참여하거나 수요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고통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스트레스와 고통 해소방법

대 처 방 법	소 극 적	적 극 적
개인적	담배, 술, 울고,	이웃, 친구들과 말하고,
종교적	기도	종교에 귀의
사회적	증언	정대협 운동에 참여, 수요시위 참여 등

#### 4. 침묵의 맥락: 생활, 문화, 언어의 요인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들 대부분은 악몽, 자살시도 등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50년간 침묵을 지키고 말하지 않았다. 왜 그토록 말하기 어려웠을까? 이들이 침묵을 지키게 한 요인들은 무엇일까? 이것은 크게 가족관계 단절, 어려운 생활환경 등 생활환경의 요인, 문화적 요인, 언어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이들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가족관계의 단절 등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경우들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여성들 대부분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 아무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었다. (사례 3) 그리고 고향과 가족에게 돌아가서 말할 기회가 있었던 경우조차도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정절이데올로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1990년대 초기에 신고를 받을 때 친척들이 말하지 말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사례 4).

또한 당시에는 생존조차 어려운 생활환경으로서 매일 먹고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틈도 없었다. 당시에는 해방만 되고 건국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건국되고 나서도 초창기였는데 6.25 전쟁까지 터지고 하는 통에 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 상담 등과 같은 사회복지제도도 없었고 이들을 구제하는 다른 법이나 제도적 지원체계가 없었다. 이것은 당시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1950년에 터져서 3년간 계속된 한국전쟁 또한 끔찍한 파괴, 죽음, 고통, 악몽 같은 생활과 함께 고향으로부터의 단절, 가족으로부터의 단절 등을 불려옴으로써 이전의 과거 경험을 희석화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고통이 너무나 클 때 과거의 고통은 기억에서 희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시민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이 썩어서 수술을 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례 1의 경우 어떤 병원의 원장이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보살펴주었는데, 할머니가 말 안 해도 의사와 간호사들은 진단을 해보고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더라는 것이었다. 젊은 여성이 그 어린 나이에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안부 같은 상황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 여성들이 이처럼 적대적인 환경과 분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주위의 이런 도움과 함께 그들이 삶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말할 기회가 있었던 경우조차도 순결이데올로기, 반일정서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웠다. 순결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위안부라는 낙인은 여성으로서의 삶에 치

명적이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위안부 피해자는 (신고 후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나병환자 보듯 했다"고 말했다 (사례 6). 또한 어떤 이들은 가족, 친구 등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소외를 당할까 우려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일본 식민지치하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되어 반일정서가 강한 당시 한국에서 이들은 일본군에게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로 몰리거나 않을까 겁나서 말을 못했을 것이다.

이들 여성들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순결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 사회라는 요인 외에도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언설화 하기 힘들었다는 언어적 요인이 컸으리라고 생각된다.<sup>1)</sup> 무엇인가 커다란 피해를 당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강간인지, 매춘인지, 무엇인지 규정하기가 어려웠고, 이것을 제대로 표현할 언어가 없었다. 다 알다시피 "성희롱"이란 용어가 생기기 전에는 성희롱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성희롱으로 규정해서 대응할 수가 없었고, "아내구타"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는 그런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아내구타나 가정폭력으로 규정해서 대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당시에는 모두들 이것을 쉬쉬하는 사회분위에서 이를 담론화해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언설화의 어려움은 그들의 정체성 혼란과도 관련이 되는데 그들은 자신이 처음에는 강간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매춘을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자신들이 식민지하에서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겠고 일본군과 동일시하여 황군에 봉사하는 애국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 혼란 때문에 더더욱 이들은 자신들이 당한 것이 무엇인지 규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따라서 정체성을 은폐하고 침묵을 지키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뭔가 알고 있다해도 이를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뭔가 말을 하고 싶는데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이 없어서 표현을 못하는 수도 있다.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정절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알면서도 말하지 못한 면이 있을 것이고, 자신의 피해를 무엇인가로 규정해서 말하고 싶지만 이를 표현할 적합한 말이나 용어, 담론이 없어서 못했

1) 이 소절에 사례인용이 없는 것은 언설화의 어려움 때문에 사례가 자신의 경험을 무엇이라고 규정해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담론분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정대협이나 여성학에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담론이 언설화 되자 그들의 말이 붓물처럼 터져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심영희, 1998).

### 5. 맺는 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위안부제도의 성립, 위안부의 동원과정, 위안소에서의 생활 등에 초점을 두는데 비해 이 글은 시간적으로 훨씬 오랜 기간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초점이 되지 못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후 생활이 어떠한지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50년간의 침묵이 이들에게 어떤 고통과 후유증을 가져왔으며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는지 살펴보고, 이들이 어떻게 침묵을 깨고 신고 및 증언을 하게 되었으며 증언의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특히 신고 및 증언 후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은 집합기억을 복원시키고 나아가 역사를 다시 쓰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은 바로 그들이 피해자로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50년 동안이나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온갖 권력과 무력으로 억누를 수 없는 진실의 힘, 그것을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50년간의 침묵이 깨어지게 된 것은 결국 정부에서 위안부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고 신고접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배경이 되었고, 정부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정대협의 10년간의 노력의 결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규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집합기억의 복원을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와 장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법적인 제도와 장치를 만들도록 추진력을 가하는 데는 시민운동을 통한 의식 변화와 여론 및 담론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0세기의 묵은 찌꺼기들을 털어 내고 정리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새 천년을 맞이 위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0년 법정>이 준비되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처벌이나 배상을 실질적으로 하는데 목적을 두기보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 즉 일본의 이러한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여론을 환기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상징적 재판소를 만들자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인 재판소를 만드는데도 법제도와 장

치가 모두 필요하고 동원되어야 하고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집합기억의 복원에 있어서는 여론형성과 함께 법적 제도가 매우 중요함을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심영희 2000 “침묵에서 증언으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귀국 이후의 삶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3 권 2호 여름호 (통권 79호)
- 1998 “여성의 인권,”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

## (3) 일제강점기 법체계의 성격

김창록 (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1. 머리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계속된 일제강점기 35년간의 법은 애당초 법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무릇 법이란, 단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제정될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법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 강도집단의 내부규율은, 그것이 법률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법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인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05년의 이른바 「을사조약」은, 일제가 조약체결권과 비준권을 가진 대한제국의 황제 및 그의 대신들을 강박하여<sup>1)</sup> 체결한 것이었다. 그런데, 1919년의 「국제연맹규약」, 1928년의 「부전조약」, 1945년의 「국제연합헌장」에 의해, 기존의 국제관습법을 확인하는 형태로 확립되고, 1969년의 「조약법에 관한 비인 조약」 제51조와 제52조에 의해 재확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르면,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을사조약」은 무효인 것이다. 그리고 이 조약이 무효인 까닭에, 그것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여, 한국의 독립을 사실상 침탈한 가운데 조약의 형식만을 취해 체결된 이후의 일련의 조약들(「한일협약」[1907.7.24.],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1909.7.12.],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1910.6.24.] 등) 및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 이른바 「합병조약」 또한 무효이다.<sup>2)</sup> 따라서 그 조약에 근거한 일제의 35년간의 지배는 오로지 물리력에만 근거한 강제점령이며, 일제가 발한 법 또한 물리력만을 배경으로 한 강제적인 명령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 법은, 그 자체 실정법으로서 정당하게 성립된 유대민족에 대한 나찌 독일의 법과는 달리, ‘實定法の 不法(gesetzliches Unrecht)’<sup>3)</sup> 이 문제되기 이전에 이미 법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제강점기의 ‘법’ 체계의 성격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애당초 넌센스인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법체계의 전모를

1) 그 강박의 예는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을 들어 보면, 1) 1905년 11월 15일, 특파대사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조약의 초안을 한국 황제에게 제시하면서, “이 안은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제국정부의 확정된 방침이므로 금일 중요한 것은 단지 폐하의 결심 여하이다. 이것을 승낙하든지 혹은 거부하든지 마음대로지만, 만약 거부하면 제국정부는 이미 결심한 바 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컨대 귀국의 지위는 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 이상으로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며, 한층 불이익한 결과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라고 한 것(「伊藤大使內謁見始末」, 神川彦松監修/金正明編, 『日韓外交資料集成』 第六卷上, 巖南堂書店, 1964, 25면), 2) 11월 17일 오후, 대신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본회의장 안까지 칼을 찬 일제 헌병과 경찰들이 몰려 들고, 회의장 주변과 궁궐 안팎에는 완전무장한 일본군이 겹겹이 둘러싸고, 일본공사관 앞 등 서울 시내 전역을 무장한 일본군이 시가행진하고, 시내의 각 성문에는 야포와 기관총까지 갖춘 부대가 배치되는 등 대대적인 무력시위가 자행된 것(이태진 편저,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 “보호조약”에서 “병합조약”까지 -』, 까치, 1995, 49-62면 참조), 당시의 이토오의 한 수행원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11월 17일의 회의에서 이토오의 강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반대한 한규설 참정대신이 별실로 끌려 나갈 때, “이토오 씨는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때를 쓰면 죽여 버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마침내 황제의 재가 나서 조인의 단계가 되어도 참정대신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가 이것을 의아해하자 이토오 후는 중얼거려듯이 ‘죽여 버렸겠지’라고 시치미를 댔다. 열석한 각료 중에는 일본어를 이해하는 자가 두세명 있어서 이 말을 듣고는 곧 옆사람에게 다시 그 옆사람에게 이 일을 전하여 조인은 어려움 없이 일사천리로 끝나 버렸다”라고 하는 것(西四 公堯大佐, 『韓末外交秘話』, 1930. 中塚明, 『近代日本と朝鮮』, [第三版], 三省堂, 1994, 97-98면에서 재인용) 등이다.

2) 이태진 편저(주 1); 權奇薫, 『1904年-1910年 韓日間の諸條約の效力에 관한 研究 - 強迫에 의해 締結된 條約인 點을 中心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8.; 김명기 외 5인, 『정신대대의 인권침해에 대한 한일간의 법적 제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 논총』 37-2, 1992; 尹塚悅朗, 『1905年の '韓國保護條約'의 無効と從軍慰安婦 強制連行問題のゆゑ』, 『法學セミナー』 466, 1993.10.; 李泰鏞, 『韓國併合は成立していない』(上)(下), 『世界』, 1998年7月8日(『한국사시민강좌』 19, 일조각, 1995); 荒井信一, 『第二次日韓協約の形式について』, 『季刊 戰爭責任研究』 12, 1996年夏季號; 李泰鏞, 『韓國侵略に關する諸條約だけが破格であつた』, 『世界』 1999年3月(『전통과 현대』 9, 1999 가을호); 笹川紀勝, 『日韓における法的な“對話”をめざして』, 『世界』 1999年7月號; 李泰鏞, 『略式條約でどうやって國權を移讓できるのか』, 『世界』 2000年5・6月(『전통과 현대』 10, 1999 겨울호) 참조.

3) 한편, ‘무효론’에 대해서는 사카모토 시게키, 은노 후쿠즈 두 교수에 의한 ‘유효 부당론’의 입장에서의 비판이 있다. 坂元茂樹, 『日韓は舊條約問題の落とし穴に陥ってはならない』, 『世界』 1998年9月號; 海野福壽, 『韓國併合』, 岩波書店, 1995; 海野福壽, 『韓國併合條約』無効論をめぐって』, 『季刊 戰爭責任研究』 12, 1996年夏季號; 海野福壽, 『李教授『韓國併合不成立論』を再檢討する』, 1999年10月(『전통과 현대』 9, 1999 가을호)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별도의 글에서 제시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사카모토 교수도 인정하고 있는(주 1)과 같은 강박의 사실들은, 교수의 다른 논문(『日韓保護條約の效力』, 『法學論集』(關西大學) 第44卷4 5合併號, 1995.1.)의 세밀한 분석에 따른다고 해도,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것을 증명해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만을 지적해 둔다.



그러나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것은 우선 그 시기의 법체계가, 비록 규범적인 효력은 가지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법으로서 통용되었던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역사 및 법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35년간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그 법적인 측면에서의 이해 없이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 또한, 한편으로 조선시대에서 한말을 거쳐 전개된 전통법체계 및 그 서양법과의 초기적인 접촉을, 다른 한편으로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현대의 법체계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그 사이에 해당하는 일제강점기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는 불가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는 현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광복 후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여러 방면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sup>3)</sup> 그러나 과연 일제 잔재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잔재의 실체가 무엇인가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서 외쳐지는 청산은 언제까지나 공허한 구호에 머무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는 법체계의 면에서의 '일제 잔재'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청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것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라는 과제는 한국법사에 있어서의 보다 근본적인 의문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한국법에 있어서의 '근대'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다. 이 의문은 한국법의 과거와 현재의 위상을 점검하기 위한 척도의 도출을 위해서는 물론, 한국법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방향을 가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대답되지 않으면 안될 의문이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법체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 '근대'의 의미가 다소 애매한 모습으로 포착되고 있다.

즉 일제강점기의 법체계는, 혹은 "전통시대에서 근대, 현대로 넘어오는 세계사적 과정에서 필연적인 것"이었던 "구미법의 수용"과정에서 일제라는 "불유쾌한 매개자"에 의해 도입된 것이었다.<sup>4)</sup> 라고 평가되거나, 혹은 "근대적 법"이기는 했지만 "자의적 전제지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sup>5)</sup> 라고 평가되고 있다.<sup>6)</sup> 평가에 따라 다소 무게중심을

달리 하기는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법체계를 근대와 연관 지운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이러한 이해들은, 특히 남한의 법체계가 일제강점기 법체계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한국법에 있어서의 '근대'를 부정적인 이미지가 배어있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의미를 이해하기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그리고 다시 그 원천인 일제강점기의 법체계에 대한 보다 파고 든 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인식 위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의 접근을 통해 일제강점기 법체계의 보다 명확한 자리 매김을 시도한다.

첫째는 명확한 평가기준에 입각하는 것이다. 이 글은 '立憲主義'를 평가의 기준으로 동원하여 일제강점기 법체계의 성격을 규명한다. 여기에서 입헌주의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의거하여 통치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즉 그것은 근대의 천부인권론에서 출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으며, 그것을 위한 국가 정책의 국민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국민들의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의 권력분립을 핵심적인 요소로 하는 원리이다.<sup>8)</sup> 필자는 이러한 입헌주의야말로, 일제에 의해 강점되기 직전인 19세기 말 이래 근대국가의 건설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던 한민족이 추구해야 할 원리였으며, 일제에 의한 강점이 끝나고 해방이 된 순간에도 역시 한민족에게 과제로서 남아 있던 원리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입헌주의' 원리가 일제강점기의 법체계에 대한 평가기준으로서 동원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동원함으로써 그 성격규명이 보다 확실해 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일제강점기 법체계의 성격을 일본제국주의 그 자체의 법체계의 성격과 연관 지어 파악하는 것이다. 필자는 일제강점기의 법체계가 바로 그 지배자인 일제 자체의 법체계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전자의 성격에 대한 이해는 후자의 그것에 대한 이해 위에서 비로소 명확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일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그 법체도를, 즉 일제강점기의 법의 이념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필자는 위에서 지적한 일제 강점기 법체계에 대한 애매한 평가가 위

의 양자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데서 초래된 불충분한 이해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양자의 통일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sup>9)</sup>

요컨대, 이 글은 입헌주의라는 평가기준을 동원하고, 일제 자체의 구조적 특성에 주목하고, 이 양자와의 연관성 속에서 일제강점기의 법체계를 통일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시도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 법체계의 바탕이 된 기본원리와, 그 입법의 특성, 그리고 법령의 구조에 대해 살펴 본다. 특히 그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일제의 특성과 그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 속에서 접근하며, 입법의 특성에 대해서는 일제의 지배기구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체화한 조선총독의 지위 및 권한,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입법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었던 칙령制定權에 대한 이해 속에서 접근한다.

## II. 일본제국주의의 특성

일제강점기의 법체계는 일본제국주의라는 특별한 성격을 가진 나라가, 이민족 지배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형성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기본원리는 일본제국주의의 성격 및 그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접근될 수 있다.

흔히 일제의 특성, 특히 그 극단적인 침략적 성격과 관련하여 그 '근대'의 조속성이 지적된다. 즉 1853년의 미국제독 페리의 黑船으로 상징되는 외압에의 굴복과 그 결과로서의 불평등조약으로 시작된 일본의 '근대'는, 그것을 끌어 갈 내적 역량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조속한 발전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원천적으로 침략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그것이다.<sup>10)</sup> 그런데 이와같은 주로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파악된 일제의 특성은 그 법체계의 기본원리의 측면에서는 우선 '外見的 立憲主義'로서 파악된다.

일제의 기본원리를 압축적으로 담은 1889년의 「大日本帝國憲法」은, 메이지(明治)의 관료들이 영국 프랑스 미국의 헌법사상을 주의 깊게 배척하고, 대신에 「프로이센헌법」에 응축되어 있던 독일의 헌법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그 모델이 된 「프로이센헌법」

은, 시민혁명에 성공한 영국 및 프랑스의 민주주의 의회주의 헌법사상의 전래를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후발자본주의 국가 독일의 헌법으로서, 강대한 군주권과 상대적으로 제약된 의회권 및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君權主義의 헌법이었다.<sup>11)</sup> 즉 일제의 모델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입헌주의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입헌주의는 「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과정에서 한번 더 제약되었다. 그것은 메이지의 관료들은 물론 영국 프랑스 미국의 헌법사상에 입각한 헌법론을 펼쳤던 '자유민권파'까지도 포함한, 모든 일본인들의 공통의 절대가치였던 天皇=國體라는 원리가 작용한 결과였다.<sup>12)</sup> 그리하여 완성된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전권을 장악한 절대자로서의 천황(제1장)과, 입법 및豫算議定에 관한 극히 제한된 '協贊' 권한을 부여받은 의회(제3장), 천황의 '輔弼'機關으로서의 國務大臣(제4장), "천황의 이름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소(제5장), 그리고 온갖 유보가 붙은 권리와 자유만이 인정된 '臣民'(제2장)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sup>13)</sup>

이와같이 일제의 기본원리를 담은 「대일본제국헌법」은 이중의 제약에 의해 한층 왜소화된 '외견적 입헌주의'의 헌법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특성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한정된 입헌주의조차도 다시 보다 우월한 神權主義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일본제국헌법」은 그 제1장 제1조에서 "大日本帝國은 萬世一系の 天皇이 統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만세일계란 일제의 건국신화에 의해 지지되는 관념이었다.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기초하는 일본의 건국신화는, 천황이, 신화 속의 조상신인 짐무(神武)의 개국 이래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동시에 천지와 함께 영원히 융성할 존재로서, 역사적인 변동과 인간적인 타락을 초월하여 영원히 일본을 지배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만세일계란 바로 이와같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는 천황의 절대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sup>14)</sup>

그러한 천황은 살아있는 신('現人神'), 곧 절대가치 그 자체였다. 즉 그것은 신적인 권위에 의해 지지되는 까닭에 어떠한 정당화도 필요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서양의 절대주의헌법에서는 군권의 세속적 절대성을 의미하는 데 그친

3) Gustav Radbruch, *Gesetzliches Unrecht und bergesetzliches Recht, Rechtsphilosophie*, 5. Aufl., 1956, S. 347ff.

4) 각 방면에서의 청산과제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김삼용 외4 편, 『무크 친일문제연구』 1, 가람기획, 1994 참조.

5) 최종고, 『歐美法 수용과 한국 法文化』, 『계간 사상과 정책』, 1989년 가을호, 181, 17면. 또한 崔鍾庫, 『韓國法思想史』,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9, 252면도 참조.

6) 朴秉濤, 『法制面에서 본 日帝의 統治方式』, 『韓國法制史攷』, 法文社, 1983, 444면.

7) 이러한 평가는 일제강점기의 법체계에 대한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대한 연구 일반에서 발견된다. 즉 일제의 강점은 '착취와 억압을 위한 것이기는 했지만 "근대적"인 측면도 있었다' 라고 하는 평가가 그것이다. 예를 들면 金雲泰,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 博英社, 1985, 6-7, 570-571면 참조.

8) 權寧星, 『新版 憲法學原論』, 法文社, 1994, 6-9면.

9) 이 글에서 법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0) 예를 들면 車基壁, 『日本帝國主義 植民政策의 形成背景과 그 展開過程』, 車基壁 譯, 『日帝의 韓國 植民統治』, 정음사, 1985, 20-26면; 金雲泰(주 7), 23-46면.

11) Menger, C. F.,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der Neuzeit. Eine Einf hrung in die Grundlagen*, 4 Aufl., Heidelberg, 1984, Kap. 6.; 小林孝輔, 『ドイツ憲法小史』, 『新訂版』, 學陽書房, 1992, 제6, 7장; 佐藤功, 『君主制の研究 - 比較憲法的考察 -』, 日本評論社, 1957 참조.

12) 김창록, 『일본에서의 서양헌법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 「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에서 「일본국헌법」의 출현까지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8., 제2장 참조.

13) 「대일본제국헌법」의 내용은 김창록(주 12), 부록의 번역문 참조.

14) 橋川文三他1編, 『近代日本政治思想史』 1, 有斐閣, 1971, 86-97면.



‘神聖’이라는 표현은 일본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즉 천황은 문자 그대로 “神聖하기 때문에 犯해서는 안되”는 존재였다.(제3조) 뿐만아니라 천황은 동시에 세속적인 절대권력자였다. 즉 천황은 입법 행정 사법의 전국가권력을 장악하는 “統治權의 總攬者”(제4조)였다.

일제는 이와같이 권위와 권력의 통합체인, 절대가치로서의 천황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일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향으로 구조화되었다. 하나는 일본정치사상사학자인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이야기하는 ‘抑壓 移讓의 구조’이다. 마루야마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절대가치인 천황에 의해 지배되는 일제의 신민들에게는 자유로운 주체적 의식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들의 의식과 행동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형태의 서열질서 속에서 보다 상위의 자의 존재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한 구조 속에서 억압의 이양에 의한 균형의 유지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위로부터의 억압을 아래에 대한 자의 발휘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양시켜 감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경우 이양해야 할 억압의 정도는 중심에서의 거리에 비례하여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일제라고 하는 동심원의 가장 변두리에서는 그 억압감이 폭발의 충동에 의해 내몰릴 정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sup>15)</sup>

다른 하나는 ‘責任의 轉嫁에 의한 無責任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위의 ‘억압 이양의 구조’를 말하자면 뒤집어 놓은 것이다. 주체적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단지 상위의 자의 존재에 의해 규정되었던 일제 신민들의 행동에는 주체적 책임의식이 따를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 책임은 자신에 대한 억압의 이양자인 상위의 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책임의 전가는 최종적으로는 중심점인 천황에게로 돌리게 된다. 그런데 천황에 이르러 책임은 영원한 시간 속으로 확산되어 사라져 버리게 된다. 왜냐하면 현실의 천황은 그 권위와 권력을 영원한 과거 속에 존재하는 조상신에게서 부여 받은 것이므로, 그 책임 또한 그 조상신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 조상신

은 ‘신’인 까닭에, 인간적인 책임을 추궁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억압 이양의 구조’와 ‘무책임의 구조’를 낳는 절대가치로서의 천황에 의한 지배, 즉 일본적 신권주의 야말로 일제를 다른 제국주의국가들과 구별지우는 ‘질적인’ 특수성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부터 일제의 한층 왜소화된 입헌주의는 물론, 그 이민족 지배의 극단적인 억압적 성격이 유출되었던 것이다.

### III. 지배이데올로기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한국을 ‘병합’하면서 발표한 천황의 詔書 「韓國을 帝國에 併合하는 件」<sup>16)</sup>은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고 한국의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고 민중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을 “보호”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역대 총독들에 의해, 강점하 한국<sup>17)</sup>의 산업을 발전시키고(‘식산흥업’), 강점하 한국을 일제와 동일하게 취급하며(‘內鮮融和’, ‘一視同仁’), 그리하여 동양의 평화에 기여하겠다(‘동양평화’)라는 시정방침<sup>18)</sup>이 거듭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한국 지배의 기본정책은, 이미 1904년 6월 11일의 「帝國의 對韓方針」<sup>19)</sup>에서 잘 나타나듯이, “한국에 대하여 정치적 및 군사적 보호의 실권을 장악하고 경제적으로는 더욱 더 우리(일제)의 이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또한 1909년 7월 6일의 「對韓政策確定의 件」<sup>20)</sup>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실력을 증진하고 그 근거를 심화시켜 내외에 대해 다룰 수 없는 세력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것은 그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경제적인 이권을 쟁기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의 면에서는 일제는 당시 식민지 쟁탈전에 몰두하고 있던 다른 제국주의국가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즉 일제는 식민지 착취를 통한 본국의 발전과 부흥의 추구라고 하는 목적의 면에서는 다른 제국주의국가들과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그러한 목적의 추구는 다른 제국주의국가들에 비해 한층 더 억압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관철되

었다. 그것은 물론 일제가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제의 구조적 특성이 그 ‘邊境’인 한국에서 한층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일제의 지배이데올로기는 그 헌법인 「대일본제국헌법」과 한국의 관계에서 잘 나타난다. 일제는 한국을 강점하면서, 한국에서의 「대일본제국헌법」 시행의 문제와 관련하여, 7월 廟議를 거쳐 決定한 「併合實行에 關한 方針」의 「附 憲法の 釋義」라는 項目에서 다음과 같은 方針을 定했다. 즉 “韓國을 併合하는 以上 帝國憲法은 當然히 그 新 領土에 施行되는 것으로 解釋한다. 그러나 實際로는 新 領土에 對해 帝國憲法の 各條章을 施行하지 않는 것이 適當하다고 認定되므로 憲法の 範圍內에서 除外法規를 制定한다”<sup>21)</sup> 라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명확해 보이는 이 방침은 사실은 몹시 어정쩡한 것이었다. 우선 일제는 한국에서도 「대일본제국헌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헌법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지배를 관철하려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헌법의 범위내’라고 하는 원칙에 묶어 두려고 했다. 일제의 이러한 혼란된 태도는, 자신의 타민족 지배를 ‘立憲的’인 強辯해야 했던 사정에 기인한 것이었으나, 어쨌든 그러한 혼란은 한국과 「대일본제국헌법」의 관계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대일본제국헌법」의 한국에의 적용여부의 문제는 특히 조선총독의 制令制定權과 「대일본제국헌법」 사이의 부정합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 제기되었다. 원래 이 문제는 1896년에 대만에 대한 일제의 지배법체계의 기본원칙을 정한 법률 63호 「臺灣에 施行할 法令에 關한 法律」이 일제의 제국의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었다. 즉 법률 63호는 대만총독에게 “그 관할영역 내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그 명령(律令)의 제정권이 「대일본제국헌법」의 입법에 관한 규정, 즉 제5조 “天皇은 帝國議會의 協贊을 얻어 立法權을 行使한다”라는 규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벌어졌고(이른바 ‘63 문제’), 다시 그 논란이 ‘外地’에도 헌법이 시행되는가라는 문제로 발전하여, 이후 일제의 정치가 및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적인 논쟁거리가 된 것이다. 이 법률 63호는

1906년에 법률 31호로 대체되었으나, 거기에서도 대만총독의 율령제정권이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63문제’는 계속적인 논란거리가 되었다.<sup>22)</sup> 그런데 일제가 한국에 대한 지배법체계의 기본원칙을 정한 1911년 3월 24일의 법률 30호 「朝鮮에 施行할 法令에 關한 法律」<sup>23)</sup>은 바로 이 법률 31호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 법률에 의해 조선총독에게 인정된 제령제정권에 대해서도 「대일본제국헌법」 제5조와의 관계가 문제시되게 된 것이다. 즉 총독의 제령이 입법사항을 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의회와의 협찬을 거치지 않는 것은 위헌이 아닌가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제정부는 「대일본제국헌법」이 한국에서도 시행된다는 원칙 아래 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권의 위임’이라는 논리로 대처하려 했다. 즉 제국의회와의 협찬을 얻은 법률로써 조선총독에게 입법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조선총독의 제령제정권은 입법권의 행사에 관한 「대일본제국헌법」 제5조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제령제정권은 일반적 포괄적으로 행정기관인 조선총독에게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위임명령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법권의 위임’이라는 법리로 정당화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에서의 「대일본제국헌법」의 시행여부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일제의 헌법학계에서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시 일제의 헌법학자들의 주장은 각각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로 나뉘었다.<sup>24)</sup> 그러나 그 외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즉 패전전 일본의 헌법학계는 크게 호즈미 야즈카(穂積八東)에 의해 대표된 군권주의학과 미노베 타즈키(美濃部達吉)에 의해 대표된 ‘입헌주의’ 학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위의 문제에 대한 양자 모두의 결론은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는 절대자인 천황에 관한 규정만이 “외지”에도 당연히 적용되며, 그 이외의 “외지” 지배법규는 전적으로 천황의 자의에 맡겨져 있다’라는 것이었다. 호즈미와 그의 제자 우에스기 싱키찌(上杉愼吉)에 의해 주장된 적극설은, 천황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일본인의 활동의 법이고 道이다. 감히 의심하지 않고, 감히 묻지 않고, 단지 그것에 따를 뿐이다”<sup>25)</sup> 라는 특수 일본적 ‘국체

15) 丸山眞男, 「超國家主義의 論理와 心理」, 『現代政治의 思想와 行動』, 未來社, 1964, 25-26면.  
 16) 『朝鮮總督府官報』(전142권, 아세아문화사 영인, 1984-1988) 제1권 13면. 이하 이 책은 「官報」로 줄여 쓴다.  
 17) 일제강점기의 한반도를 지칭하는 명칭으로서 종래 ‘조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그것은 1910년 8월 29일의 일본 천황의 칙령 제318호에 의해 대한제국이 라는 국호가 조선으로 바뀐 것에 기초 한다. 하지만, 머리말에서 지적한 것처럼 [합병조약]이 무효라면, 그것을 근거로 한 위의 칙령 또한 무효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한반도는 ‘조선’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 정당한 명칭은, 1919년 ‘3.1운동’의 결과 한국인들의 총의에 의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는 ‘대한제국’이며, 그 이후 1945년의 광복까지는 ‘대한민국’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양자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강점하 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용어는 예컨대 ‘조선총독’이나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의 경우와 같이 고유명사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기로 한다.  
 18)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1940의 각 총독의 시정방침 참조.  
 19) 外務省編, 『日本外交年表主要文書(上)』, 原書房, 1965, 224면.  
 20) 神川彦松監修/金正明編, 『日韓外交資料集成』第六卷下, 巖南堂書店, 1965, 1254-1256면.

21) 神川彦松監修/金正明編, 『日韓外交資料集成』第八卷, 巖南堂書店, 1964, 324-325면.  
 22) 中村哲, 『植民地統治法의 基本問題』, 日本評論社, 1943, 72-112면. 그리고 中村哲, 『植民地法』, 嗣信成他3編, 『日本近代法發達史』5, 勁草書房, 1958도 참조.  
 23) 『官報』 제3권, 743면.  
 24) 淺見登郎, 『日本植民地統治論』, 巖松堂書店, 1928, 124-133면; 平野武, 『日本統治下の朝鮮의 法的地位』, 『阪大法學』83, 1972.12., 45-54면; 鈴木敬夫, 『法을 통한 朝鮮植民地 支配에 關한 研究』,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89, 52-56, 360-371면 참조.  
 25) 上杉愼吉, 『教育勸話ノ構成』, 『國體憲法及憲政』, 有斐閣書房, 1915, 83면.



론'에 입각한 그들의 헌법사상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천황의 자의적 지배 이외의 그무엇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없었던 것이다. 또한 미노베에 의해 주장된 소극설 및 절충설은, "헌법 이전부터 이미 圓滿無制限"인 천황의 권력<sup>26)</sup>의 한국에서의 자의적인 행사를 주장하는 것에 다름아니었던 것이다.<sup>27)</sup>

이와같은 논리에 따라, 한국에서는 극히 제약된 형태의 입헌주의조차도 인정되지 않았다. 즉 한국의 인민들에게는 '협찬' 권한을 가지는 의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낼 권리와 온갖 유보가 붙은 '신민'의 권리조차도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서 이중으로 제약됨으로써 왜소화된 '입헌주의'가 다시 한번 더 제약되어 완전히 배제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입헌주의의 배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오히려 「대일본제국헌법」에서 그 '입헌주의'를 제거하게 되면 오로지 신권주의만이 남게 되며, 바로 그 특수 일본적 신권주의가 한국에 대한 지배이데올로기의 전부였다는 것이다. 일제의 강점, 따라서 그 법체제는 그러한 지배이데올로기의 반영이었던 것이다.

#### IV. 지배기구의 특성

이러한 일제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전형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그 지배기구의 정점에 위치한 조선총독이었다. 조선총독에 의해 대표되는 일제의 지배기구의 특성은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모든 권력의 통합과 그 통합된 권력의 무책임성이었다.

1910년 9월 30일의 勅令 제354호 「朝鮮總督府官制」<sup>28)</sup>에 따르면, 조선총독은 "親任으로 하고 육해군대장으로 총원"하며(제2조), "天皇에게 直隸"하며, "제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上奏하고 裁可를 받는다"(제3조) 한국 지배의 최고기관이었다. 이러한 총독의 지위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8월 19일의 칙령 제386호 「朝鮮總督府官制 中改正」<sup>29)</sup>에 의해 그 제2조의 "육해군대장으로 총원"하며라는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바뀌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후 한번도 문관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천황에게 직에"한다라는 총독의 근본적인 지위는 강점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수한 지위를 가진 조선총독은 뒤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입법에 관한 권한은 물론이고, "육해군을 통솔하고 조선의 防備를 관장"할 권한과 "제반의 정무를 통할"할 권한(제3조), 소속관청의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권한(제5조), 소속관리의 감독, 임면에 관한 권한과 "所部文官의 位勳을 上奏"할 권한(제6, 7조) 등의 행정에 관한 권한과, 「朝鮮總督府裁判所令」<sup>30)</sup>이 칙령은 「통감부재판소령」이 개정된 것이며, 칙령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병합' 후 제령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 되었으며, 이후 제령에 의해 개정되었다.에 의해 인정된 한국에서의 재판소의 설립 폐지, 관할구역 및 그 변경, 판사의 신분 보장 및 징계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법에 관한 권한을 한 손에 장악한 절대권력자였다.

게다가 그러한 방대한 권력을 장악한 총독은 천황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존재였다. 총독은 물론 한국의 인민들에 의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 총독의 자문기관으로서 朝鮮總督府 中樞院이 있기는 했다. 그리고 중추원의 의장(政務總監)을 제외한 부의장(1인), 고문(5인), 참의(65인)에는 한국인이 임명되는 것이 통례였다. 하지만 중추원의 자문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것은 오로지 총독의 운용여하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의원의 신분도 보장되지 않아, 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언제든지 의원을 해임할 수 있었다.<sup>31)</sup> 결국 중추원은 총독에 대한 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는 기구였던 것이다.

총독의 무책임성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 일제의 중앙정부와의 관계이다. 일제의 '외지' 지배를 위한 중앙기구는 청일전쟁의 결과 대만을 식민지화한 직후인 1895년 6월에 설치된 臺灣事務局에서 출발하여 빈번한 변화를 거듭하게 되는데, 한국의 지배를 위한 중앙기구에 관한 규정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른바 '병합' 직전인 1910년 6월 21일의 칙령 제279호 「拓殖局官制」 제1조 "척식국은 내각총리대신에게 소속되어 대만 및 한국에 관한 사항을 統理한다"라는 규정에서였다.<sup>32)</sup> 이 척식국은 1913년 6월 13일에 폐지되고, 그 사무는 內務省으로 이관되었다. 즉 1913년 6월 13일의 칙령 제142호 「內務省官制 中改正」<sup>33)</sup>에 의해 내무대신이 "조선, 대만 및 樺太에

관한 사항을 統理"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에 상응하여「朝鮮總督府官制」도 개정되어 같은 날의 칙령 제114호 「朝鮮總督府官制 中改正」<sup>34)</sup>에 의해 종래 총독이 천황에게 상주하고 재가를 받을 때는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내무대신을 거쳐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다가 1917년 7월 31일에 또 다시 '외지' 지배에 관한 중앙기구로서 내각의 외국으로 拓殖局이 설치되면서<sup>35)</sup>, 「朝鮮總督府官制」도 다시 개정되어 "내무대신을 거쳐"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다.<sup>36)</sup>

그리고 이후에도 일제의 '외지' 지배를 위한 중앙기구는 빈번한 변화를 거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그 중앙기구와 조선총독의 관계가 커다란 문제로 비화된 것은 1929년에 이르러 '외지' 지배를 일원적으로 관할하기 위한 기구로서 拓務省이 설치되면서였다. 1927년 11월에 칙무성설치준비위원회가 일제의 내각에 설치되면서 시작된 그 설치 과정에서 줄곧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조선총독을 칙무대신의 감독 아래에 둘 것인지의 여부였던 것이다. 일제 정부의 최초의 「拓務省官制案」에는, 칙무대신이 다른 '외지'와 함께 한국에 대해서도 통리할 권한을 가지며, 그에 상응하여 「朝鮮總督府官制」의 개정을 통해 조선총독이 천황에게 상주하고 재가를 받을 때는 "칙무대신을 거쳐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도록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추밀원에서 심의과정에서 추밀고문 사이토오 마코토(齋藤實)에 의해 그것이 조선의 특별한 지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sup>37)</sup> 사실 일제 정부의초안은 조선총독에 대한 기존의 취급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 초안의 내용은 위에서 살펴 본 1913년의 「內務省官制 中改正」과 그에 따른 「朝鮮總督府官制 中改正」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3.1 운동 직후에 조선총독을 지낸 경험을 가진 사이토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조선에 대한 원활한 지배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을 법하다. 어쨌든 그후 오랜 논쟁과 절충 끝에, '조선총독의 上奏權은 종전대로 하고, 조선총독은 관제상 칙무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칙무성에 管理 殖産 拓務 3局 외에 특별히 朝鮮部를 설치하여 조선을 다른 '외지'와 별도로 취급한다'라는 타협안<sup>38)</sup>이 마련되었으며, 그것을 기초로 1929년 6월 8일에 칙령 제152호 「拓務省官制」<sup>39)</sup>가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그 「官制」에서는 "칙무대신은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關東廳, 樺太廳 및 南洋廳에 관한 사무를 統理하고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및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업무를 감독한다"(1조), "朝鮮部에서는 조선총독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3조)라고만 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성립 후 「臺灣總督府官制」, 「樺太廳官制」 및 「關東廳官制」는 모두 개정되어 그 장관은 모두 칙무대신의 '감독'을 받도록 명기되었다. 그러나 「朝鮮總督府官制」는 결국 개정되지 않았다.<sup>40)</sup> 이렇게 해서 '외지'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칙무대신의 경우에도, 조선총독부에 관한 사무에 관한 그 통리권은 기껏해야 "단지 내부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았"<sup>41)</sup>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총독과 일제의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그 후 1942년에 이르러 다소 변화했다. 1937년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치달은 일제는, 그 본국 및 '외지' 행정기구의 일원화의 필요에 따라 1942년에 칙무성을 폐지하고 한국에 대한 사무를 본국 및 다른 '외지'에 대한 사무와 함께 내무대신의 소관으로 이관하였다. 즉 1942년 11월 1일의 칙령 제725호 「內務省官制 中改正」<sup>42)</sup>에 의해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및 樺太廳에 대한 사무"는 내무대신이 "통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여 같은 날의 칙령 제727호 「朝鮮總督府官制 中改正」<sup>43)</sup>에 의해 조선총독의 천황에의 상주 및 재가는 "내무대신을 거쳐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하도록 되었다. 물론 이 내용은 위에서 살펴 본 1913년 및 1929년의 일제 중앙정부와 조선총독의 관계에 대한 여러 칙령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26) 美濃部達吉, 「律令と憲法との關係を論ず」, 『憲法及憲法史研究』, 有斐閣書房, 1908, 269-271면.

27)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김창록, 「일본제국주의의 헌법사상과 식민지 조선」, 『法史學研究』 제14호, 1993.12. 참조.

28) 「官報」 제1권, 185년

29) 「官報」 제40권, 1025년

30) 1909년 칙령 제236호, 朝鮮總督府編, 『朝鮮法令輯覽』 上卷 1, 1940, 第3輯, 73-75면.

31) 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5호 「朝鮮總督府中樞院官制」, 『官報』 제1권, 186년.

32) 山崎丹照, 『外地統治機構の研究』, 高山書院, 1943, 20면.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척식국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통일적인 중앙기구로서 설치된 것이었던데 대해, 일제의 주장에 따르면이라도 한국은 아직 '법적으로'는 보호국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일제가 한국을 '병합' 하기 이전에 이미 식민지의 하나로서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제의 침략야욕이 한발 앞서 법을 통해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3) 「官報」 제10권, 1199-1200년.

34) 「官報」 제10권, 1199년.

35) 1917년 7월 31일 칙령 제73호 「拓殖局官制」 제1조 "척식국은 내각총리대신의 관리에 속하며 조선, 대만, 화태 및 관동주에 관한 사무 및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官報」 제31권, 423년.

36) 1917년 7월 31일 칙령 제78호 「朝鮮總督府官制 中改正」, 「官報」 31권 423-424년.

37) 山崎丹照 (주 32), 24-28면 참조.

38) 「東京朝日新聞」 1929.5.24., 山崎丹照 (주 32), 31-32면에서 재인용.

39) 「官報」 제82권, 129-130년

40)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대만총독의 경우는 그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최초로 규정한 1896년의 칙령 제88호 「대만총독부조례」에서부터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는 기구였으며, 그 후 중앙기구의 빈번한 개편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운 기구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山崎丹照 (주 32), 177-194면. 따라서 이때의 관계개정도 단지 그 감독을 받는 중앙기구가 바뀌었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외지' 지배를 위한 중앙기구의 강화를 위한 칙무성의 설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결국 조선총독에 대해 칙무대신이 어느 정도의 통제권한을 확보하는가라는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조선총독의 특별한 지위는 그 통제권한을 배제한 것이었다.

41) 松岡修太郎, 「朝鮮に於ける行政權及びその立法權並びに司法權との關係」, 船田享二編, 『法政論叢』(京城法文學會 第一部論集) 제4책, 1931, 128면.

42) 「官報」 제135권, 757년.

43) 「官報」 제135권, 757년.



하지만, 역시 같은 날의 칙령 제729호 「朝鮮總督 및 臺灣總督의 監督 등에 관한 件」<sup>44)</sup>에 의해 “내무대신은 조선총독에 대해 조선총독부에 관한 사무의 통리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게 (제1조) 되었으며, 또한 같은 칙령에 의해 내각총리대신과 각성대신은 칙령 소정의 “각 해당사무에 한하여” 각각 “조선총독 및 대만총독을 감독할 수 있”고, 그 “사무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게(제2조) 되었다.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여 위의 「朝鮮總督府官制中 改正」에 의해 “총독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및 각성대신의 감독을 받는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것은 조선총독의 지위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을 의미한다. 즉 조선총독은 그 이전까지는 천황에 대해 책임을 질 뿐, 그 누구로부터도 지시나 감독을 받는 입장에 는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내무대신의 지시와 내각총리대신 및 각성대신의 감독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천황에게 직예”한다라는 조선총독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그의 지위에 대해 발생한 변화는 한정된 의미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즉 우선 조선총독에 대한 내무대신의 지시는, 대만총독에 대한 그것과는 달리, 결코 ‘감독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때의 개정으로 내무대신의 감독을 받도록 된 대만총독의 경우, 그 지시는 일반행정감독권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었지만, 단지 내무대신의 통리만을 받도록 된 조선총독의 경우는, 그 지시는 “사무통리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 즉 “어떤 조치를 할 것 또는 하지 말 것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는 데 지나지 않는”, 따라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었다.<sup>45)</sup> 다음으로 내각총리 대신 및 각성대신의 감독권도, 단지 칙령 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 감독권에 머무르는 것으로서, 그것에 의해 조선총독이 “그들 각대신의 하급관청이 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 지시는 지휘권에 기초한 훈령이나 지령과는 다른 것이었으므로 개개의 세세한 점에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었다.<sup>46)</sup> 요컨대 일제의 ‘외지’ 지배를 위한 중앙기구인 다른 ‘외지’ 장관의 경우와는 달리 조선총독에 대해서는, 제도상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인 행정감독’의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약한 통제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총독에 대한 이와같은 통제의 결여는 물론 “천황에

게 직예”한다고 하는 조선총독의 특별한 지위에서 연유하는 결과였다. 즉 조선총독은 궁극적으로는 천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황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국 무책임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절대적인 권력과 무책임, 이것이 조선총독의 따라서 한국에 대한 일제의 지배기구의 특성으로서 도출되는 것이다.

## V. 입법의 특성

일제강점기의 입법의 성격은 바로 그러한 한국에 대한 일제의 지배이데올로기 및 지배기구의 특별한 성격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것이었다.

「대일본제국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천황이 장악하고 있었다. 다만 천황은 일정한 경우에 그 행사에 있어서 제국 의회의 관여를 인정했다. 즉 천황은 이른바 大權事項(제6조-제16조)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칙령을 제정할 수 있었다. 다만 입법사항, 즉 제2장의 신민의 권리의무와 제5장의 재판소의 구성, 재판관의 자격, 재판관에 대한 징계, 특별재판소의 관할, 행정재판소 및 제6장의 조세,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규율해야 했으며, 그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는 “제국의회와의 협찬”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제5조). 따라서 일제의 입법기구의 핵심은 천황 및 제국의회와의 협찬을 받는 천황이었다. 그리고 그 밖에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內閣總理大臣, 各省大臣, 北海道長官, 府縣知事 등이 있었다.<sup>47)</sup> 일제에 따르면 한국은 그들의 영토의 일부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입법권의 행사나 입법기구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할 터였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입법권의 행사 및 입법기구는 일제의 그것과 비교할 때도 특별한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총독에게 制令制定權이라는 입법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은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서 제령제정권과 조선총독부령 제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조선총독부령은 총독이 상위의 법률과 명령의 범위 내에서 발하는 명령으로서, 그 제정권은 다른 일제의 행정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독이 일제의 행정기관인 까닭에 당연히 인정되는 권한이었다.

하지만 제령제정권은 조선총독만이 가지고 있는 입법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었다. 조선총독의 제령제정권은 1910년 8월 29일에 「합병조약」과 동시에 공포된 긴급칙령 제

324호 「朝鮮에 施行할 法令에 관한 件」<sup>48)</sup>에서 처음 인정되었다. 그런데 제국의회와 폐회를 이유로 발해진 이 긴급칙령은, 다음의 제국의회에서 제령제정권의 위임을 긴급칙령의 형식으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부딪혀 승인을 얻지 못함으로써, 1911년 3월 24일의 칙령 30호<sup>49)</sup>에 의해 장래에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동일한 내용에 유효기간을 붙인 법률안이 의원에 의해 제출되었고, 결국 “기한을 붙여도 곧 그것을 연장한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에 대한 조항은 삭제되어, 위의 긴급칙령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朝鮮에 施行할 法令에 관한 法律」<sup>50)</sup> 이 1911년 3월 24일 법률 제30호로 성립되었다.<sup>51)</sup> 그 법률 제30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2조 前條의 명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勅裁를 청해야 한다.

제3조 임시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조선총독은 즉시 제1조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은 발포후 즉시 勅裁를 청해야 한다. 만일 勅裁를 얻지 못한 때는 조선총독은 즉시 그것이 장래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공포해야 한다.

제4조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선에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勅令으로 정한다.

제5조 제1조의 명령은 제4조에 의해 조선에 시행된 법률 그리고 특히 조선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및 칙령에 위배될 수 없다.

제6조 제1조의 명령은 制令이라고 부른다.

요컨대 이 법률에 의해, 조선총독에게 이른바 제령제정권이 부여되었다. 일제에 따르면, 조선총독에게 입법에 관한 그러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조선은 인정 풍속 기타 각종의 사정이 내지와 달라 동일한 법령으로 이를 다스릴 수 없고, 또 임기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sup>52)</sup> 그러나 그 실질적인 이유는 한국에서 자의적인 입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이 법률에 의해 조선총독은 한국의 민민들의 권리와 한국의 사법 및 조세에 관한 사항을, 일본에서라면 제국의회에서의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칙

제”를 얻는 것만으로 자신의 명령으로서 규율할 수 있었다(제1, 2조). 조선총독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칙제”를 얻는다고 하는 요건마저도 무시할 수 있었다(제3조). 뿐만아니라 같은 사항에 대해 정한 일본에서의 법률이나 긴급칙령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제5조의 반대해석). 요컨대 조선총독의 제령제정권은 근대 입헌주의가 보호하고자 한 가치들에 대한 규율에 있어서의 일체의 제한을 배제하여 자의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위의 법률 제30호에 의해 담보되는 자의성은 단지 조선총독이 제령으로 한국의 입법사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일제가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또한 언제든지 천황이나 제국의회가 한국의 입법기구로서 등장할 수도 있었다. 즉 천황은 오로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칙령으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선에 시행하게 할 수 있었으며(제4조), 또 언제라도 특별히 조선에만 시행할 것을 목적으로 칙령이나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제5조).

법률 제30호에 의해 담보되는 이러한 입법의 자의성은 일제의 또 다른 ‘외지’인 대만의 경우와 비교할 때에도 특별한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만총독도 1896년의 법률 제63호 및 1906년의 법률 제31호에 의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즉 율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 위의 법률 제30호는 이 법률 제31호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는데, 그후 5년의 기한이 붙어 있었던 법률 제31호가 두번의 기한연장 끝에, 1917년에 법률 제3호 「臺灣에 施行할 法令에 관한 法律」<sup>53)</sup>에 의해 대체되면서, 대만총독의 율령제정권은 조선총독의 제령제정권과는 달리 크게 제약되게 되었다. 그 법률 제3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만에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칙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경우에 관청 또는 公署의 직권, 법률상의 기간 기타의 사항에 관해 대만 특수사정에 의해 특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칙령으로 별단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조 대만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시행할 법률이 없는 것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운 것에 관해

48) 『官報』 제1권, 17면.

49) 『明治四十三年勅令第三百二十四號ノ效力ヲ將來ニ失ハシムルノ件』, 『官報』 제3권, 743면.

50) 『官報』 제3권, 743면.

51) 법률 30호의 성립과정에 대해서는 松岡修太郎 (주 41), 140-142면; 松岡修太郎, 『朝鮮行政法提要(總論)』, 東都書籍, 1944, 20면; 條約局法規課, 『日本統治時代の朝鮮』(『外地法制誌』 第四部の二), 1971, 90-117면 참조.

52) 條約局法規課 (주 51), 98면.

53) 山崎丹照 (주 32), 351면.

44) 『官報』 제135권, 757-758면.

45) 山崎丹照 (주 32), 78-79면, 122면.

46) 山崎丹照 (주 32), 81면, 124면.

47) 內田達孝, 『全訂 朝鮮行政法概要』, 近澤書店, 1935, 61-81면.



서는 대만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조 전조의 명령은 주무대신을 거쳐 칙령을 청해야 한다.

제4조 임시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만총독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즉시 제2조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해 발한 명령은 공포후 즉시 칙령을 청해야 한다. 칙령을 얻지 못한 때는 대만총독은 즉시 그 명령이 장래 효력이 없음을 공포해야 한다.

제5조 본법에 의해 대만총독이 발한 명령은 대만에 시행되는 법률 및 칙령에 위반될 수 없다.

이 법률 제3호의 안을 제출한 대만총독은 그 제안이유로서 “대만의 문화발달의 現狀을 고려하여, 칙령으로 법률을 시행하는 길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sup>54)</sup> 을 들었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이 법률 제3호는 그 이전의 법률 제31호, 따라서 법률 제30호와 비교할 때 단지 조문의 순서만을 바꾼 듯이 보인다. 그리하여 제국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그 안이 법률 제31호와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위원은 ‘법의 규정 자체는 종래와 대차 없는 듯이 보이지만, 종래는 위임입법을 원칙적으로 인정할 데 대해,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모국(일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적용할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임입법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근본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 라고 대답했다.<sup>55)</sup>

이 ‘중대한 차이’란 법률 제3호 제1조, 제2조 및 제5조에 의해 대만총독의 율령제정권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이 있다. 먼저 제1조 제1항은 법률 제30호의 제4조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다. 하지만 그 제2항이 추가됨으로써 법률 제3호는 법률 제30호와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 즉 종래 일본의 법률을 ‘외지’에 시행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된 것은, 지배의 편의를 위해 그 법률의 내용을 적절히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도, 그렇게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었다. 법률 제31호 및 법률 제30호에는 그 근거규정이 없었으며, 따라서 칙령으로 법률의 내용을 변경하여 ‘외지’에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었던 것이다. 법률 제3호 제1조 제2항은 바로 그러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 즉 “관청 또는 公署의 직권, 법률상의 기간”은 물론 “기타의 사항에 관해”서도 “대만 특수사정에 의해 특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칙령으

로 별단의 규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종래 율령에 의한 依用이라는 방식으로 대만에 시행할 수 밖에 없었던 법률을 칙령(시행칙령 및 특례칙령)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대만총독의 율령제정권이 제약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법률 제3호 제2조에 의해 대만총독의 율령제정권은 조선총독의 제령제정권에는 가해지지 않는 추가적인 제약을 받게 되었다. 즉 대만총독은 이때부터 입법사항 일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대만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시행할 법률이 없는 것” 또는 칙령에 의해 법률을 시행하기 “어려운 것에 관해서”만 율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칙령에 의한 법률의 시행이 일반적인 것이 됨에 따라, 즉 “대만에 시행되는 법률”이 많아짐에 따라, 율령이 그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법률 제3호 제5조는, 비록 그 내용이 법률 제30호 제5조와 거의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총독의 율령제정권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대만에서는 이른바 ‘內地法律延長主義’가 실시되게 되었다. 즉 일본의 법률이 ‘연장’되어, 다시 말해 그대로 대만에도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대만에서는 민법 상법 등의 일제의 법률이 원칙적으로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특례칙령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른바 ‘의용’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던 한국의 경우와는 선명히 대비되는 것이었다. 그러한 차이는 조선총독의 입법에 관한 권한이 대만총독의 그것에 비해 더 강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제의 법률을 다소 수정하여 ‘외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만에서는 칙령으로 해야 했지만, 조선에서는 제령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조선의 경우 의용되는 법률은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률의 내용과 배치되는 명령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대만의 경우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sup>56)</sup> 요컨대 조선총독의 입법에 관한 권한은 대만총독의 그것과 비교할 때에도 훨씬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VI. 법령의 구조

일제강점기의 법령은 그와 같은 입법의 자의적인 성격 때문에 극히 복잡하고 애매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대일

본제국헌법」,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을 근거로 하는 한국의 법령의 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sup>57)</sup>

#### 1. 일제의 법령

##### (1) 법률

###### 1) 칙령에 의해 특히 조선에서 시행할 것을 정한 법률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 천황이 제정하는 일제의 법률은 한국에서는 천황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칙령으로 그 시행을 정할 때에 비로소 시행되었다(법률 제30호 제1조). 따라서 법률은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다. 그리고 칙령으로 법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불편한’ 조문은 이를 제외하고 시행하는 일부시행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즉 이른바 한국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그 법률의 일부에 변경을 가하여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는 법률에 그 근거가 필요했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대만의 경우에는 이 근거가 있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없었다. 따라서 칙령으로 한국에 법률을 시행할 때 그 특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례에 관한 별개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sup>58)</sup> 물론 이것은 매우 번잡한 방식이었으며,<sup>59)</sup> 실제로도 그러한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특례가 필요한 경우 제령으로 ‘의용’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칙령에 의해 시행되는 법률은 칙령의 내용으로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로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칙령으로 시행된 법률의 개폐가 있었을 때는, 개정법률을 칙령으로 시행하는 추가적인 절차 없이, 그 효력은 조선에도 당연히 미치는 것이 된다.

###### 2) 조선에서 시행할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

이것은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령이 이러한 종류의 법률에 위배될 수 없다는 규정(법률 제30호 제5조)에 의해 그것이 한국에도 시행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

다고 해석됨으로써 그 시행이 인정된 것이다. 여기에 해당 하는 것으로는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 「조선은행법」 등과 같이 그 명칭 및 내용상 명백히 한국에 시행될 것이 전제된 법률과, 「국방보안법」과 같이 그 부칙에서 특별히 한국에서의 시행을 규정한 법률이 있었다. 또한 이렇게 명시적으로 한국에서의 시행이 전제된 것 외에도, 일제와 ‘외지’ 상호간의 교섭을 규율한 법률, 예를 들면 민사 및 형사에 관해 일제과 조선 대만 關東州 南洋群島 등과의 사이의 교섭을 규율한 ‘공통법’ 등과, 속인적 성질을 가진다고 해석된 법률, 예를 들면 널리 ‘일본제국주의의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적용된 「恩給法」 등이 한국에도 시행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들 법률은 그 명칭이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한국에도 시행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하지만, 어떠한 법률이 한국에 시행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각 법률에 대해, 그 내용을 보고 규정의 성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sup>60)</sup> 라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었다. 위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법률 중 어떤 것이 한국에 대해 적용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법집행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었던 것이다.

##### (2) 칙령

###### 1) 칙령

천황의 명령인 칙령은 천황의 통치권이 미치는 한국에도 원칙적으로 시행된다고 해석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칙령이 한국에 시행된다는 것은 아니었다. 먼저 대권사항에 대한 독립명령인 칙령은, 그 중 한국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 예를 들면 한국에 관한 諸官制, [조선교육령] 등은 당연히 한국에 시행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당연히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다. 물론 이때에도 그 양자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단지 칙령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되었을 따름이다. 한국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된 칙령이 아닌 칙령을, 나중에 한국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칙령 자체를 개정하여 한국에도 시행할 것을 명확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칙령으로 그것을 한국에 시행할 것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 다른

54) 長尾景徳 大田修吉, 『新稿 臺灣行政法大意』, 杉田書店, 1934, 34면.

55) 山崎丹照 (주 32), 349-350면.

56) 中村哲 (주 22)의 책, 113-154면; 清宮四郎, 『外地における「法律の依用」』, 『外地法序説』, 有斐閣, 1944, 87-117면 참조.

57) 이하의 설명은 주로 山崎丹照 (주 32), 306-367면; 松岡修太郎 (주 51)의 책, 16-32면; 條約局法 規課 (주 51), 61-81면을 참조하여 기술한다.

58) 「關稅法」, 「關稅定率法」, 「保稅倉庫法」 등이 1920년 8월의 칙령 제306호에 의해 한국에 시행될 때, 그와 동시에 그 특례에 관한 별개의 법률, 즉 1920년 법률 제53호 「關稅法關稅定率法保稅倉庫法及 假置場法等ノ朝鮮ニ於ケル特例ニ關スル件」이 제정된 것이 그 예이다.

59) 그러한 불만을 감안하여 법률의 제정 당시에, 그것을 ‘외지’에 시행할 것이 예상될 때는, 법률 그 자체를 식민지 시행에 편리하도록 입법상의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다. 1) 법률에서 행정관청의 직권 에 대해, ‘주무대신’ 혹은 ‘각성대신’ 등의 문자를 피하고, ‘행정관청’ 또는 ‘정부’ 등으로 규정하여 특 례 없이 바로 식민지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 2) 법률 중에 ‘외지’ 관계의 특례규정을 두거나, 혹은 넓은 범위의 특례사항의 규정을 칙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는 것. 예를 들면, ‘법률 을 “외지”에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칙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규정을 특히 법률 중에 두는 것이 그것이다.

60) 松岡修太郎 (주 51)의 책, 17면.



칙령으로 시행해야 할 칙령을 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되었다.

이에 대해 집행명령 또는 위임명령인 칙령은 법률의 집행을 위해 혹은 법률의 위임에 의해 발하여지는 것인 까닭에 그 한국에의 시행은 관계 법률의 한국에서의 시행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석되었다. 즉 한국에 시행되지 않는 법률의 집행명령 또는 위임명령은 당연히 한국에도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한국에 시행되는 법률의 경우에는 그 유형이 다양한 까닭에 다시 칙령의 시행여부도 문제가 되었다. '조선에 직접 시행되는 법률'의 경우는 그 집행명령 또는 위임명령은 당연히 한국에도 시행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이 때에도 그 법률이 한국 및 일제 또는 다른 '외지'에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때는, 그 집행명령 또는 위임명령은 어디에 시행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가를 다시 따져서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시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명령들은 한국에는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다. 다음으로 '칙령으로 조선에 시행된 법률'은, 본래는 한국에 시행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법률이 한국에 시행되기 이전에 제정된 명령들은 당연히 한국에는 시행되지 않으며, 그 법률이 한국에 시행된 이후에 제정된 명령들의 경우도, 그 법률은 한국과 다른 지역에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제정의 목적을 따져서 한국에서의 시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되었다.

## 2) 긴급칙령

"공공의 안전을 보지하거나,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에 따라 제국의회 폐회의 경우에 법률에 대신"하기 위해 제정되며,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만일 의회에서 승낙하지 않을 때는 장래에 향해 그 효력을 상실함을 공포해야" 하는, 긴급칙령의 한국에서의 시행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특히 한국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준하여, 한국에 직접 시행된다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특히 한국에 시행할 목적을 가지지 않고서 제정된 긴급칙령을 사후에 한국에 시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였다. 1) 그러한 긴급칙령은 발령 당초에는 당연히 한국에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다. 이러한 해석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한국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되지 않았다는 데서 찾을 수 밖에 없다. 2) 긴급칙령은 의회의 승락을 얻은 후에는 법률과 완전히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승락 후의 긴급칙령을 한국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한국에서의 시행과 마찬가지로, 칙령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을 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3) 긴급칙령 발령에서 의회의 승락까지의 사이에 그것을 한국에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긴급칙령이 법률사항을 규율하는 것인 까닭에, 칙령으로써 한국에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 (3) 閣令 및 省令

일제의 내각총리대신 및 각성대신이 제정하는 각령 및 성령은, 그들의 권한이 원칙적으로 한국에 미치지 않았으므로, 역시 원칙적으로는 한국에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었다. 첫째 한국에도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특히 중앙관청의 권한에 유보되어, 조선총독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그에 관한 각령 및 성령이 한국에 시행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총독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특히 중앙관청의 통제 아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그 한도에서 각령 또는 성령이 조선에 시행된다고 해석되었다.

## 2. 조선총독부의 법령

### (1) 제령

위에서 설명한 일제의 법령은 조선총독의 제령제정권과의 관계상 예외적으로만 한국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법령의 대부분은 제령 이하 조선총독부의 법령이었다. 그 중에서 특히 제령에는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 등 다수의 중요한 법령이 포함되었으며, 35년간 총 676건으로, 구제령의 개폐에 관한 것을 제외해도 270건에 달했다.<sup>61)</sup>

조선총독은 한국에서의 입법사항, 즉 한국인민의 권리의무, 한국에서의 사법 및 조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제령을 제정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총독은 일본의 법률을 의용하는 제령을 제정할 수 있었다. '의용'이란, 예를 들어 「조선민사령」(1912년 제령 제7호)의 제1조에서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신탁법 상법 수표법 유한회사법 파산법 화의법 민사소송법 등을 열거한 후, 제2조 이하에서 조선에서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과 같이, 일본의 법률에 변경을 가하여 조선에 시행하는 것이다.

이들 제령의 제정에 있어서 조선총독에게 가해지는 제약은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천황의 칙재를 얻어야 된다는 것과, 한국에 시행된 법률 그리고 특히 한국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및 칙령에 위배될 수 없다는 것 두 가지 뿐이었다. 따라서 조선총독은, 대만총독의 경우와는 달리, 위의 사항에 관해 언제나 제령을 제정할 수 있었으며, 또한 조선에서 시행되는 예외적인 법률 및 칙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떠한 내용이라도 제령 속에 담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법률이 제령에 의해 의용되는 경우 그 법률은 법률로서가 아니라, 제령의 내용으로서 간접적으로 한국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즉 의용되는 법률과 제령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에서 법률의 개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과가 한국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었으며, 또한 총독은 일본에서의 법률에 개폐가 없는 경우에도 언제나 제령의 개폐를 통해 그 법률의 시행여부 및 시행의 정도를 좌우할 수 있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제령에 의해 의용된 법률이 개정된 때는,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개정법률에 의한다는 특별 규정이 있었다.<sup>62)</sup>

### (2) 조선총독부령

조선총독부령은 조선총독이 그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해 발할 수 있는 명령이었다(「관제」 제4조). 여기에서 특별한 위임이란, 법률 및 칙령에 의한 위임 뿐만아니라, 그것들과 동렬에 위치하는 제령에 의한 위임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었다.

조선총독의 권한은, 내각총리대신 및 각성대신과 거의 동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령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대체로 각령 또는 성령으로 규정할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령에 붙일 수 있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구류, 2백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서 칙령과 같은 정도(1890년 9월 18일 법률 제84호 「命令의條項違犯에 관한罰則의件」)로서 상대적으로 강한 벌칙이었다.

### (3) 지방관청의 명령

#### 1) 道令

도령은 도지사가 관내의 행정사무에 관해, 직권 또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발하는 명령이었다(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7호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sup>63)</sup> 제6조). 도령은

그 내용상 일제의 府縣令에 상당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붙일 수 있는 벌칙은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구류, 백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서<sup>64)</sup>, 그 정도는 각령 또는 성령과 같으며, 부현령보다 훨씬 높았다. 이 벌칙은 대만의 경우와 비교할 때에도 높은 것이었다. 이에 해당하는 대만의 법령은 州令 및 廳令인데, 그 부가할 수 있는 벌칙의 한도는, 주령의 경우 2월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구류, 7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청령의 경우 구류 또는 과료로서 도령보다 훨씬 낮았다.

#### 2) 島令

도령은 島司가 관내의 행정사무에 관해, 법령에 의해 또는 도지사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발하는 명령이었다.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제21조의 5) 여기에는 벌칙을 부가할 수 없었다.

## 3. '舊法令'

소위 '병합'의 논리에 따르면, 한국은 없어지고 한국이 일제의 영토의 일부가 된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그 때까지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법령은 그것이 구한국의 법령이든 일제의 법령이든 그 효력을 상실할 터였다. 하지만, 정리통합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1910년 8월 29일 제령 제1호 「朝鮮에서의法令의效力에 관한件」<sup>65)</sup>에 의해 "조선총독부 설치시 조선에서 그 효력을 상실해야 할 제국법령 및 한국법령은 당분간 조선총독이 발한 명령으로서 계속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정해졌다. 또한 이들 법령은, 1910년 10월 1일 제령 제8호 「明治43年制令第1號에 의한命令의區分에 관한件」<sup>66)</sup>에 의해 "제령으로 정할 것을 요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은 제령, 조선총독부령으로써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은 조선총독부령, 도령으로써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은 도령으로써 정한 것으로" 취급되게 되었다.

여기에서 '한국법령'이란 대한제국의 법령을 그리고 '제국법령'이란 일제의 법령을 의미한다. 그런데 '병합'시에 효력의 존속이 인정된 일제의 법령은 그 한국에 대한 침략의 정도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일제는 1876년부터 한국 각지에 영사관을 두고, 在韓日本人에 관한 영사관령을 발했다. 그리고 1905년의 「을사조약」 체결로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한 후에는, 영사관을 폐지하고

61) 이에 비해 35년간의 강점기간 동안 한국에서 시행된 일제 법령의 수는 130건에 불과했다. 條約局 法規課 (주 51), 64면.

62) 1911년 6월 22일 제령 제11호 「制令ニ於テ法律ニ依ルノ規定アル場合ニ於テ其ノ法律ノ改正アリタルトキノ效力ニ關スル件」, 「官報」 제4권, 465면.

63) 「官報」 제1권, 187-188면.

64) 1919년 8월 19일 칙령 제392호 「朝鮮總督府道知事ノ發スル命令ノ罰則ニ關スル件」, 「官報」 제40권, 1028면.

65) 「朝鮮ニ於ケル法令ノ效力ニ關スル件」, 「官報」 제1권, 25면.

66) 「明治四十三年制令第一號ニ依ル命令ノ區分ニ關スル件」, 「官報」 제1권, 228-229면.



통감부 및 이사청을 두어 통감 및 이사관이 재한일본인에 관해 각각 행정명령인 통감부령 및 이사청령을 발했다. 그 후 1909년 7월에 사법권, 1910년 6월에 경찰권을 탈취한 후에는, 새로 설치된 統監府警務總長이 경성에서 警務總監部令<sup>67)</sup>을, 각도에 설치된 警務部長이 각도에서 警務部令<sup>68)</sup>을 직권 또는 위임에 의해 발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법 및 경찰에 관한 일제관청의 명령은, 일본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이른바 '병합' 시 한국에서 시행된 일제의 법령은, 한국에서 제정된 것으로서는 통감부령, 경무총감부령, 경무부령, 이사청령, 영사관령(영사관 폐지후, 계속 이사청령으로서 효력을 가진 것) 5종이 있었으며, 기타 재한일본인에 대한 법률, 칙령, 외무성령 등 일본에서 제정된 것도 있었다. 이들 일제의 법령 모두가 제령 제1호 및 제8호에 의해 계속 효력을 존속하게 된 것이다.

이들 구법령의 인적 효력은 다양했다. 기본적으로는 원래 한국법령은 원칙적으로 한국인에게, 한국에서의 일제법령은 원칙적으로 일본인에게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구한국법령은 원칙적으로 한국인에게, 구일제법령은 원칙적으로 일본인에게 적용된다고 해석되었다. 하지만 잔존한 일제의 법령은 지역적 또는 인적 효력이, 그 복잡한 연혁에 따라 더욱 복잡했다. 예를 들면 「보안규칙」(1906년 통감부령 제10호), 「출판규칙」(1907년 통감부령 제20호), 「신문지규칙」(1908년 통감부령 제12호)은 일본인 및 외국인에게 적용되었으며, 「옥외집회금지 건」(1910년 총독부령 제3호)은 한국인, 일본인 및 외국인에게 적용되었다. 또한 경무총감부령은 경성에서만 효력을 가지다가, 1919년에 이르러 총독부령 제132호<sup>69)</sup>에 의해 조선총독부령으로 정한 것으로 되어 전 한국에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었다. 이들 구법령은 그후 점차 폐지되어 갔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는 법령들은 강점이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을 이어갔다. 1945년 현재, 구한국법령으로 「신문지법」(1907년 법률 제1호), 「보안법」(1907년 법률 제2호), 「국유미간지이용법」(1907년 법률 제4호), 「출판법」(1909

년 법률 제2호) 등 법률 칙령 훈령을 합쳐 17건, 일제법령으로는 「보안규칙」, 「출판규칙」, 「신문지규칙」 등 통감부령 및 훈령 16건이 남아 있었다.<sup>70)</sup>

## Ⅶ. 맺음말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의 법체계의 기본원리, 그 입법의 성격 및 법령의 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거기에서 우리가 끄집어 낼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 즉 '恣意性'이다. 신적 권위에 의해 지지된 일제 그 자체의 성격 및 그 연장으로서의 한국 지배기구의 성격이 자의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한 입법의 방식과 그 결과로서의 법령의 구조 또한 자의적이었다.

한국에서 입법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은 천황에 의해서 그의 마음대로 만들어 질 수도 있었고, 조선총독에 의해서 그의 마음대로 만들어 질 수도 있었다. 그에 관한 일본의 법률 및 칙령은 한국에 그대로 시행될 수도 있었고, 일부만 시행될 수도 있었고, 변형된 모습으로 시행될 수도 있었고, 전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한국의 인민들은 일본이나 대만의 인민들 보다 더 많은 벌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법전 속에 존재하는 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은 단지 자의적인 도구일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억압의 도구였고, 착취의 도구였고, 민족말살의 도구였다.<sup>71)</sup> 그리하여 또한 그에 상응하여 한국의 인민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게 되는 것은 법률만능주의, 법에 대한 불신일 수 밖에 없었다.<sup>72)</sup>

요컨대 일제강점기의 법은 마음대로 만들어지고 마음대로 집행되는 법이었다. 우리는 그러한 법을 '입헌주의적'인 법, 따라서 '근대적'인 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근대적' 이기는 커녕 오히려 '반근대적'인 것일 뿐이다. 이것은 그 법체계에 의해 한민족이 단순히 입헌주의=근대로 나아가는 것이 차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입헌주의=근대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 혹은 입

헌주의=근대로 나아가갈 가능성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해방의 시점에 선 한민족에게는 법체계와 관련하여 단순히 입헌주의적인 법체계의 수립만이 아니라, 반입헌주의적 법체계의 적극적인 청산이라고 하는 과제가 동시에 주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필자의 논문 「植民地 被支配期 法制의 基礎」(『법제연구』 제8호, 1995, 49-78면)에 수정 가필한 것이다. 이 글을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이 글의 내용을 필자의 주장으로 삼고자 한다.

67) 경무총감부령은 경무총장이 발하는 명령으로서, 구류 또는 과료를 부가할 수 있었다. 1910년 9월 30일 칙령 376호 「朝鮮總督府警務總長等ノ發スル命令ノ罰則ニ關スル件」, 『官報』 제1권, 197면. 이것은 헌병경찰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것은 1919년 8월의 관계 개편으로 경무총감부가 폐지되면서 없어졌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은 부령으로 간주하여 존속했다.

68) 도경무부령은 도경무부장이 발하는 명령으로서, 구류 또는 과료를 부가할 수 있었다. 1910년 9월 30일 칙령 358호 「統監府警察官署官制中改正ノ件」, 『官報』 제1권, 188면. 이것도 역시 헌병경찰제도를 지지하는 것이었으며, 1919년 8월에 개편되었다.

69) 『官報』 제40권, 991면.

70) 姜德相他1, 「日帝下朝鮮の法律制度について」, 『日本法とアジア』(仁井田博士追悼論文集 第3卷), 勁草書房, 1970, 323면.

71) 일제강점기 법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로는 金圭昇, 『日本の植民地法制の研究』, 社會評論社, 1987; 丘秉勳 鄭文吉, 「日帝植民地下の韓國社會法制史研究」, 문교부연구보고서 22, 1970; 南興祐, 「日帝의 韓國侵略에 있어서의 法規範과 그 適用에 관한 문제」, 『亞細亞研究』 33, 1969; 한인섭, 「권위주의적 支配構造와 法體制」, 『계간 사상과 정책』 1989년 가을호; 鈴木敬夫 (주 24), 그리고 『韓國法史學論叢』(朴秉濂教授還甲紀念論文集 Ⅱ), 朴秉濂教授還甲紀念論叢發刊委員會, 1991 제5면의 논문들 및 광복50주년 기념사업회,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1 (과거청산),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의 논문들 참조.

72) 朴秉濂, 「법치주의 실현에의 역사적 교훈」, 『법제연구』 창간호, 1991.12., 19면.



## (4) 「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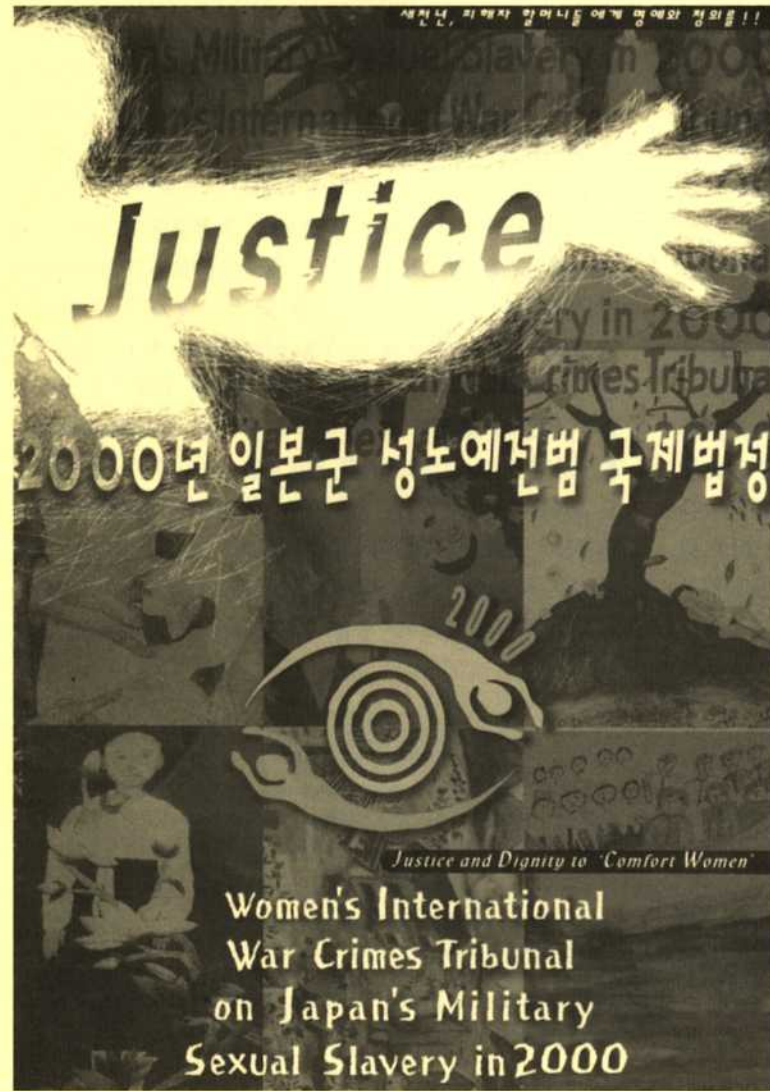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

1991년 김 학순 피해자 등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일본 국내에서 제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까지 소위 '위안부'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긴 일이 없다. 일본 거주 송신도 피해자는 8년 간의 법정 투쟁이 36초간의 기각선고 낭독으로 패소 당해야 했다.

지금의 일본에서는 재판에 승소할 길이 없다. 그래서 PCA에 가보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서류를 받아 주지도 않았다. 일본은 1930년대 아시아를 침략해 들어갔던 군국주의·제국주의 일본과 변함이 없다. 금년 들어 모리 수상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체" 운운하는 망언을 하지 않았던가.

UN인권위원회를 위시해서 국제노동기구, 거의 모든 국제여성인권 운동 등, 학계, 예술계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비판하나 일본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조약으로 정리됐고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정대협은 속수무책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한을 안고 "이대로 죽을 순 없다"고 하며 잇따라 세상을 떠나게 할 수는 없다. 1998년 일본의 VAWW-NET Japan의 대표 마쓰이 야요리가 마침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연대회의 참가 차 와서 "2000년 법정"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아시아 연대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그래서 금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바로 '위안부' 제도를 발아시킨 나라의 수도에서 범죄 국가와 책임자들을 심판하므로 사회공의를 세우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찾아주므로 그들의 인권회복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다. 폭력으로 끌려가지 않고 감언이설에 속아 따라나선 피해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행선지를 향해 연행자를 따라 출발한 순간부터 완전히 자유를 잃은 노예가 됐다. 연행도중에도 무서운 노동에 시달리고, 구타당하고(김복선), 강간당했다(이용



수). 거의 기차의 경우는 화물칸에, 배의 경우는 선창에 실렸다.

위안소에서의 인권유린은 되풀이해서 말하지 않기로 한다. 전쟁동안에 제도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은 전쟁이 끝나고 자기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을 받아드릴 수 없었다. 고향에 갈 수 있게 됐다고 했을 때도 자살한 여성이 많다(중국 한구에서). 연합군의 주선으로 귀국할 수 있는데도 자신을 더럽혀진 몸이라고 생각하고 현지에 머무른 여성도 있다(하상숙). 또한 아무 조치 없이 일본군이 전쟁했던 곳에 버려졌기 때문에 이들을 일본 여자인줄 안 현지 사람들에게 폭행 당하고 약탈당했다. 그러나 폭력을 가하는 현 주민에게 피해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을 몰라 설명할 수 없었다.(홍강림) 말을 모르고 그곳 풍속을 모르고 결혼해도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겪은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힘들다.

일본은 1965년의 한일조약으로 모든 과거는 청산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1990년 6월 6일 일본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모토오카 쇼지 의원의 질문에 일본정부 관리는 '위안부'는 일본군과 관련이 없으며 업자가 여자들을 데리고 군대를 따라다녔다고 답변했다. 1990년 '위안부' 문제의 일본군과의 관련을 부인하면서 1965년에 이 문제에 대한 보상을 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의 강한 요구는 사죄와 배상이다. 인간으로의 명예회복과 존엄성회복이다. 해방후에도 고국에서나 버려진 외지에서나 그들은 전쟁 당시 성노예였다는 사실로 소외당했다.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수치스런 존재라고 생각했다. 질병과 소외감과 부모형제에 대한 그리움과 (고국에 와서도 고향에 살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트라우마와 여러 가지 심리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지적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들이 예외 없이 한국정부가 아파트와 생활 지원금을 마련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지금도 자기 자신을 떳떳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가들이 계속해서 망언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일본은 해방후에도 계속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내놓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은 일본이 사죄를 안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에게서 검은 돈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 동안 피해자들을 연행했을 때의 수법과 같은 것으로 제2의 속임수이다. 피해자의 모든 권리를 뺏는 처사이며 제2의 모욕이다.

그래서 2000년 법정을 열고자 아시아 피해국과 가해국 일본의 관련단체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남성 국제법학자, 변호사, 역사학자, 인권운동가

등과도 모여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다. 우리 뜻이 전달된 듯 5대륙에서 여성 3, 남성 3 등 6명의 판사도 우리의 의리를 받아들여 법정의 판사직을 수락했다. 판사들도 세계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는 판사, 검사, 국제법학자들이다. 예를 들면 전 유고 전범 국제 법정 재판장을 지낸 가브리엘 커크 맥도날드(Ms Gabrielle Kirk McDonald)와 UN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전 인도 최고 재판관을 지낸 P.N.바그와티(Mr P.N.Bhagwati)가 있다.

이 재판은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어떤 국가 사법부의 판결보다 엄정하고 권위 있는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 2000년 법정은 지금까지의 전쟁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여성들이 다시는 전쟁터에서 강간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이기 이전에 떳떳한 한 인간으로, 사회 구성원, 역사 창조자로 남성과 함께 살아가는, 약자와 강자 모두가 함께 사는 새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광장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정대협 연혁

### 1990

1990.11.16 37개 여성단체와 개인이 모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결성

### 1991

1991.8.14 한국 최초로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67세) 기자회견

1991.9.18 정신대 신고전화 개통식

### 1992

1992.1.8 정대협,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회 정기수요시위 시작

1992.3.4 유엔인권위원회에 '위안부' 문제 관련호소문과 자료문건 발송

1992.8.10 서울에서 제1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대만, 필리핀 등 6개국 참가)

1992.12.1 정신대할머니 생활기금모금 국민운동본부 발족

### 1993

1993.10.21 도쿄에서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 1994

1994.2.7 일본 검찰에 '위안부' 문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 고발장 전달

### 1995

1995.2.27 서울에서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강덕경 할머니, 김순덕 할머니 그림전시회)

1995.3 한국노총, ILO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강제노동조약 위반임을 요구하는 요청서 발송

1995.12.3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민기금 반대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 1996

1996.1.24 200차 정기수요 시위

1996.3.27 필리핀에서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1996.4.8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룬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채택

1996.10.18 일본국민기금을 반대하는 '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결성, 국내모금 시작

### 1997

1997.2.27 '일본 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세미나 개최

1997.3.1 시민연대, 서명모금과 함께 독립공원에서 할머니 온겨레 돕기 모금공연

1997.8.25 정신대할머니 돕기 2차 모금 시작

1997.11.18 한국국회, 일본전범의 출입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

### 1998

1998.2.18 제300차 정기수요시위

1998.4.15 서울에서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1998.4.27 일본사법부 사상 최초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3명에게 손해배상 인정하는 시모노세끼 판결

1998.8.10 유엔인권소위원회, 부록으로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게이 맥두걸 보고서 채택

1998.10.8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일 베이징 3자회담 개최

1998.12.30 제 1회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회

### 1999

1999.3.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교육관 개관식

1999.3 ILO 전문가위원회에서 일본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 권고

1999.6.1-5 ILO 총회 참석(기준적용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회의록에 공식기재)

1999.6.4-5 유엔인권소위원회특별보고관 게이맥두걸 초청 국제심포지엄 개최

1999.12.22 제 2회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회

### 2000

2000.3.1 제 400차 정기 수요시위

2000.4.29-30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학생법정 개최

2000. 7. 28 남북공동기소장 합의

2000.8.31-9.2 할머니와 함께 하는 인권캠프

2000.9.20. 미국워싱턴 "존엄과 명예의 여성을 위한 2000년 인권상"을 할머니들께 수상

2000.10.25 2000년 법정 후원의 밤 개최



## 정대협조직표



### 실행위원소개

공동대표 : 윤정옥, 김윤옥, 지은희  
 명예대표 : 이효재  
 교육위원장 : 김혜원  
 생존자복지위원장 : 김신실  
 국제협력위원장 : 신혜수  
 대외협력위원장 : 윤순녀  
 아시아연대위원장 : 정숙자  
 진상규명위원장 : 정진성  
 재정위원장 : 유춘자  
 문화위원장 : 강혜숙  
 회계 : 최만자  
 홍보출판위원장 : 신영숙  
 서기 : 한국염  
 부서기 : 정태효  
 총무 : 양미강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와 함께 하는 단체들

### 회원단체

경남정신대문제대책을 위한 시민연대모임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교대한감리회여성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여민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협의회

### ZONTA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국정신대연구소  
 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 협력단체

나눔의 집  
 정신대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주기독살림여성회  
 기독교영화제작소 '보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교과연합 전국역사교사모임  
 한살림  
 마을수준교육과정연구소  
 청소년단체연합  
 KSCF  
 EYC  
 카톨릭대학생연대

## 정대협운동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세계 2차대전 이전부터 1945년까지, 일본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 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한일간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1990년 11월 16일에 발족되었습니다. 현재 정대협은 22개 회원단체들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본정부에 대한 7대 요구

그러나 아직도 일본정부는 공식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대협은 7대 요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① 진상을 규명할 것, ② 전쟁범죄를 인정할 것, ③ 공식사죄할 것, ④ 전범자를 처벌할 것, ⑤ 위령탑과 사료관을 건립할 것, ⑥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 ⑦ 역사 교과서에 기록할 것입니다.

### 배상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정기 수요시위

1992년 1월 시작한 수요시위는 매주 수요일 12시에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립니다. 벌써 만 8년이 지난 수요시위는 현재 435차(2000.11.15 현재)를 맞았습니다. 22개 회원단체, 15개 협력단체들이 주관하는 수요시위는 여성인권과 평화를 위한 기나긴 투쟁이며 인권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 생존자복지활동

대부분 고령이신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의료지원, 장례주관 및 절차상담, 위로회 등을 엽니다. 또 할머니들이 쉬어가실 수 있는 심터를 교육관에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할머니들이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인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심리치료와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할머니와 함께 하는 인권캠프를 통해 학생들과 활동가 할머니와의 세대간의 만남을 통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대 정부활동

대부분 생존자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이었으므로, 생활안정지원법(1993) 제정을 촉구하여 임대아파트(11-18명)에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일본전범의 출입국금지법안(1997)이 통과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1998년 5월, 일본정부가 민간차원의 위로금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대응한 범국민모금을 두차례(1997, 1998)에 걸쳐 실시하여 피해자 1인당 760만8천원을 지급하고, 한국정부의 지원금(1인당 3,150만원) 지급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 국제 인권기구와의 연대

'위안부' 문제는 인권과 양심의 소리로 전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정대협이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가져간 이래, 현재까지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법률가협회,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 위원회로부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행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시아 피해국들과 함께 거의 매년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후세들을 위한 역사와 여성인권교육의 장, 교육관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의 산 증인인 할머니들은 점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이후 돌아가신 분들이 55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후세들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짓밟힌 여성인권을 바로 세우는 역사교육의 장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교육관'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관은 30-40명 이상이 교육받을 수 있으며, 이곳은 울퉁은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의 산실입니다.



## 2000년 법정 연혁

1998.12.7	2000년 법정을 위한 한국위원회 발족식
1999.9.27	2000년 법정 학생법정 준비위원회 발족식
2000.3-5	2000년 법정을 위한 모금
2000.7.28	2000년법정의 공동기소를 위한 남북공동기소장 작성 합의
2000.7.28-8.1	2000년법정 필리핀 국제실행위원회 및 국제검사단 회의 참석
2000.8.25-26	한일 대학생 '전쟁과 여성인권' 워크샵
2000.9.1	2000년법정을 위한 전국캠페인 시작
2000.9.14-9.18	2000년법정 대만 국제실행위원회 및 국제검사단 회의 참석
2000.11.16	한국 심포지엄
2000.12.6	2000년법정 참가단 발단식
2000.12.7-12	2000년법정 개최

## 2000년 법정 활동사

### 2000년 법정이란 ?

2000년 법정은 일본군 성노예제도에 대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상징적인 국제 인권법정으로 지금도 세계각지에서 무력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여성의 존엄성 회복과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9개국이 공동개최하고 있는 법정입니다.

### 2000년 법정이 제기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1998.4.15 ~ 17	제5회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을 열기로 결정
1998. 4. 2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내부 준비위원을 구성키로 하고 위원을 선정
1998. 12. 7	2000년 법정을 위한 한국위원회 발족식
1999. 9. 27	2000년 법정 학생법정준비위원회 발족식
2000. 4.28~29	학생법정 개최(이화여대 중강당)
2000. 7. 28	2000년법정의 공동기소를 위한 남북공동기소장 작성 합의
2000. 7. 28~8.1	2000년 법정 필리핀 국제실행위원회 및 국제 검사단 회의 참석
2000. 8. 25~26	한일 대학생 전쟁과 여성 인권 워크샵
2000. 9.1	2000년 법정을 위한 전국캠페인 시작
2000. 10.25	2000년 후원의 밤 개최
2000. 11.16	정대협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2000. 12.6	2000년 법정 참가단 발단식
2000. 12. 7~12	2000년 법정 개최

## 국제실행위원회 조직표

### 공동대표

윤정옥(한국), 마쯔이 야요리(일본), 인사이 사호르(필리핀)

### 참가국가

한국: 한국위원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필리핀: 여성의 인권 아시아 센터(ASCENT)  
 중국: 상하이 '위안부' 연구센터  
 대만: 타이페이시 부녀 구원 사회복지 사업 기금회  
 북한: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법률부조합의회  
 일본: 바우넷 제팬  
 동티모르 UN 독립정부  
 네덜란드

### 국제자문위원회

아리양부르네(캐나다), 샬롯번지(미국), 프로렌스 부테구와(호주), 우스티나 돌고폴(호주)  
 알다 하시오(코스타리카), 유헤니아 피자 로베스(아르헨티나/영국), 마리엠 에리 루카스(알제리아/프랑스)  
 레파 무라제노피치(세르비아), 바히다 나이나 (인도/미국)

### 법률고문

테오반 보벤 교수(네덜란드/마스트리히 대학), 론다 코플린 교수(미국/ 뉴욕시립대학)

### 2000년 법정 한국위원회 조직

위원장 : 윤정옥  
 부위원장: 정진성, 김윤옥  
 법률위원회: 김명기  
 진상규명위원회: 강정숙  
 대외협력위원회: 신혜수  
 재정위원회: 김혜원  
 기획홍보위원회: 지은희



## 역대 회원단체, 실행위원 실무진들

### 정대협 창립을 함께한 회원단체들(1990.11.16)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구세군대한본영여성사업부, 기독교대한감리회여성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여성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한국루터교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 대한성공회어머니회, 대한예수교장로회여전도회전국연합회(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거창여성회,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회, 대구여성회, 전북민주여성회, 제주여민회, 충남여민회, 부산여민회, 인천여성노동자회, 공해추방운동연합여성위원회, 기독교여민회, 민족미술협의회여성미술연구회, 여성의 전화,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연구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여성위원회, 여성사회연구회, 한국가톨릭농민회여성부, 또하나의 문화, 두레방, 대한YWCA연합회,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여성학연구회, 정신대연구회



### 역대 실행위원 명단

- <1990-1991년> 윤정옥, 김혜원, 김신실
- <1992년> 윤정옥, 이효재, 지은희, 김신실, 김혜원, 안상남, 오종례, 박순금, 유춘자, 윤영애, 강성혜, 신혜수, 정진성, 윤순녀, 정숙자, 혜진, 이미경
- <1993년> 이효재, 윤정옥, 김신실, 김혜원, 이미경, 지은희, 신혜수, 윤순녀, 유춘자, 오종예, 정숙자, 정진성, 김희원, 야마시다영애, 윤문자, 혜진
- <1994년> 이효재, 윤정옥, 김혜원, 김신실, 권희순, 신혜수, 지은희, 윤순녀, 야마시다영애, 윤문자, 김경희, 안상남, 김희원
- <1995년> 이효재, 윤정옥, 김혜원, 김신실, 지은희, 김희원, 신혜수, 김경희, 송경자, 권희순, 윤문자, 야마시다영애
- <1996년> 이효재, 윤정옥, 지은희, 김경희, 김신실, 권희순, 윤문자, 김혜원, 정진성, 야마시다영애, 이경실, 성봉희, 윤순녀, 이미경, 김경란
- <1997년> 윤정옥, 김윤옥, 지은희, 정숙자, 김신실, 조미리, 한국염, 이경실, 이효재, 정진성, 야마시다영애, 김경란, 김혜원, 신혜수, 송경자, 윤미향, 윤순녀
- <1998년> 조미리, 김모주, 고혜정, 정진성, 이경실, 이경숙, 이효재, 윤정옥, 지은희, 김신실, 정숙자, 신혜수, 김혜원, 김윤옥, 윤순녀, 한국염
- <1999년> 이효재, 윤정옥, 김윤옥, 지은희, 김신실, 김혜원, 정숙자, 신혜수, 정진성, 신영숙, 이경실, 한국염, 윤순녀, 강혜숙
- <2000년> 이효재, 윤정옥, 김윤옥, 지은희, 김신실, 김혜원, 신혜수, 윤순녀, 정숙자, 정진성, 강혜숙, 한국염, 신영숙, 유춘자, 정태효, 최만자

### 역대 총무

윤영애 (1989-1990, 대행) 이미경 (1993) 김경희 (1993) 권희순 (1994) 윤미향 (1995-1997) 양미강 (1997-현재)

### 역대 실무자

방숙자 (1989-1990, 대행) 조취혜란 (1990-1991) 윤미향 (1992-1995) 임정덕 (1992-1995) 정혜진 (1996-1997)

유미정 (1996-1997) 임우선 (1997-1998) 조민아 (1997-1999) 고미령, 진현정, 정은정 (1999-현재)



## 정대협 10년의 발자취에 함께 동참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때로 시위현장에서 때로 지식의 담론의 장에서 언제나, 진실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힘을 함께 모으기에 주저 않았던 모든 분들의 숨결이 바로 오늘과 미래의 정대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9년간의 수요시위를 이끌어왔던 모든 단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여성교회,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예장여교역자회, 기장여신도회, KNCC 여성위원회, 기장여교역자회, 감리교여교역자회, 감리교여선교회, 세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정신연구소,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ZONTA, 경남 정신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연대, 이화민주동우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기록영화제작소 모임, 부산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나눔의 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전주기독살림여성회, 경제실천시민연대, KSCF, EYC, 청소년 단체 푸른빛, 한 살림, 청주마을수준교육연구회, 다내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화여성위원회, 경희대 총여학생회, 로터리클럽, 전국교직원노조, 전국역사교사모임, 참여연대, 대학원생 대표자 협의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겨레지킴이(고등학생동아리),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전여대협, 진주로터리클럽, 흥대 쿠사·판집, 성균관대총여학생회, 서울여대 날개달기

해외에서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주신 모든 단체와 개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LA미감리교여선교회, 뉴욕의 한인교회(이학준목사), LA 한인연장자센터(박창영목사), 미네소타 오늘과 내일 한인센터(김병문 소장), 유타주 한인교회(신옥남 목사)를 비롯한 해외의 교포들과 한인교회들 독일의 재독한국여성모임과 EMS 등 독일의 여성단체와 교회들 캐나다 정대협 지부 박을마 선생 일본의 오비린대학 신현석 목사, 일본기독교교단 관계자, 일본 시민단체들

전국민 모금운동에 함께 동참해주셨던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993년 정신대할머니 지키기 모금에 참여하신 분들(서영훈, 이수성)과 1996년 시민연대모금에 참여하신 분들(김성재, 오재식, 윤영애)과 1997년 정신대할머니지키기 2차모금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13대 국회에서, 제14대 국회에서 위안부 관련 생활안정지원법 및 일본전범 출입국 관리법안 등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활동을 위해 노력해주신 이미경, 김원웅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기록영상을 통해 이 문제를 널리 알려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낮은 목소리 1', '낮은 목소리 2', '숨결'을 통해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알려주신 기록영화제작소 모임과 미국에서 '침묵의 소리'를 만들어 서방세계에 이 문제를 알린 김대실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한국위원회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연구활동을 통해 지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최일숙, 정재정, 강창일, 신영숙, 김민철, 강정숙, 심영희, 김은실, 안상님, 하종문, 이철원, 김현미, 양현아, 여순주, 김명기, 김창록, 지정일, 홍성필, 이장희, 이상면, 정인섭, 조시현, 최봉태, 조용환, 박원순, 최영도, 안상운, 정진성, 박찬운, 박현석, 배금자, 장완익, 증언팀

국내외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숙진, 김선국, 임영신, 김박태식, 박정이, 전주기독살림여성회, 대구시민모임, 경남정대연, 진주예술보존회, 가톨릭인천교구노인연합회, 제주여민회, 제주범도민회

할머니를 지원해주신 단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눔의 집, 정신대할머니를 위한 시민모임, 경남 정신대 문제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정신대연구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특별히 이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패를 드립니다

미끼하라 씨가꼬님께서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바른 역사교육의 장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교육관을 개관하는데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주희님께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이신 손판임할머니를 오랜 세월동안 친 어머니처럼 보살피 드려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원동님께서는 1995년부터 전쟁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힘겹게 살고 계시던 피해자 할머니들을 고국으로 모셔오시는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순관님께서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대지의 눈물'공연을 통하여 국내외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알려내는데 큰 역할을 하셨으며, 공연에서 모금된 후원금을 통하여 정대협 활동과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경신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을 내면으로만 가지고 계시던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그림을 통하여 마음을 여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들께서 역사의 증언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산재단 사회복지사업재단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무료로 의료혜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경재단 광병원의 광동엽 병원장님께서는 1997년부터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의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대구지역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드립니다.